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비정규학교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제주평생교육정보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 연구진

---

## 연구책임

홍정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 공동 연구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현영섭 경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김정희 스스로원격평생교육원 원장

---



---

# Contents

## 목 차

---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1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2
- 3. 연구 방법 ..... 13

### 제2장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조건

- 1.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 17
- 2. 문해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 ..... 35
- 3.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 ..... 47
- 4. 학력인정 평생교육 기관의 개념 ..... 74

### 제3장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실태 및 여건

- 1. 비정규학교 운영 실태 ..... 91
- 2. 비정규학교 운영 여건 ..... 99

### 제4장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 1. 운영 활성화 방향 ..... 108
  - 2. 운영 활성화 전략 ..... 109
- 참고문헌 ..... 117

---

# Contents

## 표 목 차

---

<표 2-1> 평생교육기관 유형 .....	18
<표 2-2> 평생교육기관 유형(계속) .....	20
<표 2-3>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25
<표 2-4>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학력인증여부 .....	29
<표 2-5>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정의 .....	31
<표 2-6>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유형분류 .....	33
<표 2-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2013) ..	38
<표 2-8> 제주지역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2013) .....	43
<표 2-9>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	49
<표 2-10>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실 설비 기준 .....	50
<표 2-11> 각종 평생교육시설 운영조건 .....	69
<표 2-12> 노들장애인야학 수업시간표(2014년 1학기) .....	71
<표 2-13> 질라라비아학 교육과정 .....	72
<표 2-14>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분류 .....	75
<표 2-15>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 .....	76
<표 2-16> 양원초등학교 학생 현황 .....	82
<표 2-17> 양원초등학교 학생의 연령대 분포 .....	83
<표 2-18> 양원초등학교 교직원 현황 .....	83
<표 2-19> 대우조선해양 중공업사관학교 교직원 현황 .....	84
<표 2-20> 대우조선해양 중공업사관학교의 차별적 요소 .....	85
<표 2-21> 신입생 현황 .....	86
<표 2-22> 학생 충원율 현황 .....	86
<표 2-23> 중도탈락현황 .....	86

<표 2-24>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원 현황 .....	87
<표 3-1>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기본사항 .....	91
<표 3-2> 자원교사 유형별 내역 .....	93
<표 3-3> 학교 임직원 급여 지급내용 .....	93
<표 3-4> 교육과정 운영시간 .....	94
<표 3-5> 재적 학생수 통계(성인문해교육) .....	94
<표 3-6> 재적 학생수 통계(성인문해교육-연령별) .....	95
<표 3-7> 재적 학생수 통계(검정고시반) .....	95
<표 3-8> 재적 학생수 통계(검정고시반-연령별) .....	96
<표 3-9>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률('13. 2차) .....	97
<표 3-10> 학교시설 사용 .....	98
<표 3-11> 연간 학교 운영비 .....	98
<표 3-12> 서귀포오석학교 교육과정 .....	104

---

# Contents

## 그림 목 차

---

<그림 2-1>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	31
<그림 2-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개요 .....	38
<그림 2-3>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학습자 현황 .....	40
<그림 2-4>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체제 .....	41
<그림 2-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	42
<그림 2-6>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록절차 .....	52
<그림 2-7> 평생교육시설 신고 처리 절차 .....	60
<그림 4-1> 비정규학교 운영활성화 방향 및 전략 .....	110

# 제1장

##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

# 제1장 연구의 개요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의 운영 성과 파악 필요
  - 비정규학교 지원 조례 제정이 후 비정규학교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그 동안의 지원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활동이 필요함.
  
- 비정규학교의 발전 방향 설립 필요
  - 제주지역 5개 비정규학교 중 시설이 열악하고 운영상의 한계에 봉착한 기관이 존재하여, 이 기관들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기관의 현실태에 따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하여 2013년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또는 새로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 현행 비정규학교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명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 및 현황 유지를 위한 지원 조례 구성의 한계를 보임. 이에 비정규학교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지원 방향을 반영한 조례의 개정 또는 제정이 요청됨.

## 2) 연구 목적

- 비정규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력보완 및 문해교육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함.

##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1) 연구의 내용

-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운영 조건 분석.
  -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분류와 프로그램의 분류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비정규학교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위치와 프로그램의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 분석
  - 문해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을 통하여 비정규학교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으로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실시
  - 학력미인정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을 검토하여 비정규학교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탐색 실시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실태
  - 5개 비정규학교의 교사수, 학생수, 교사 급여, 교육과정 운영 등의 실태에 대한 기초 분석 실시
  - 5개 비정규학교별 운영 방향, 조직 구조 등 학교의 운영 여건 분석 실시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 평생교육기관 분석 및 비정규학교 실태 분석을 토대로 비정규 학교 발전 방안을 방향 및 전략, 조례 개정 및 제정, 지원 체계 및 평가 체계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 2)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범위 : 2013년 ~ 2014년 (2개년)
  - 기준년도 : 2014년
  - 목표연도 : 2015년 비정규학교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2015년~ 2018년 장기적 추진방안 제시
- 공간적 범위
  - 제주특별자치도 5개 비정규학교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오석학교, 등하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 3. 연구 방법

### ■ 문헌분석

-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기관, 학력인정 및 미인정 기관 운영 관련 문헌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실태 자료
- 제주지역 평생교육중장기 발전 방안 자료
- 비정규학교 및 유사 학교 지원 조례
- 제주지역 문해교육기관 운영 자료

■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5개 비정규학교 방문 및 관계자 면담

- 제주등하학교,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현장 방문 및 기관운영자, 기관 실무자 면담 실시
- 제주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면담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 등 다수)

■ 전문가 협의회

○ 평생교육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 2인(대구평생교육진흥원 연구원 1인, 평생교육전공 대학교수 1인)과 제주지역 비정규학교의 실태와 운영에 대한 간담회 실시

## 제2장

###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조건

1.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2. 문해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
3.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
4.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



## 제2장 평생교육기관의 종류와 조건

### 1. 평생교육기관의 종류

#### 1) 평생교육기관의 법적 종류

-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단체를 말함. 평생교육법 제2조 2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정의를 보면,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를 뜻함.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기관의 종류는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평생교육을 본래의 목적으로 전담하는 교육기관인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 설립 목적이 존재하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인지로 구분할 수 있음 (김진화 외, 2011). 즉, 평생교육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은 공공 평생교육시설과 일반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권두승, 최운실, 2014). 공공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국가 평생교육 전담·지원 기구로서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이 있음. 일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제31조~38조)에 의한 시설로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 부설, 학교 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등 8 가지 유형의 시설이 해당됨.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함.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유형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청소년시설, 주민자치센터 등을 말함. 이와 같은 법개념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평생교육기관은 다음 표와 같은 것들이 있음.

<표 2-1> 평생교육기관 유형

◆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기관유형	설립근거	기관소개	예시
2019년 평생교육사업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19조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법 제20조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 수행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충청도, 충남,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14.1월 기준)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법 제21조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박물관, 사회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지정기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음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 ('11년 지정 시작)
	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법 제15조	-지역내 평생학습 주체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해 '지역을 하나의 학습공동체로 구축'하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가에서 지정된 학습도시	시·군·구 평생교육 전담부서 또는 평생학습센터 등
	국가 및 지자체 평생학습추진 기구	평생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지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 함.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일반 평생교육 시설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2조	-시·도 내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둔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법 제14조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 둔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학교의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 사업 수행학교)	평생교육법 제29조	대학평생교육 활성화지원사업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교육과정과 체계적 학사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지원·선정된 대학	대학교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지정 대학(사업운영 지정기간에 한함)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0조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 시범학교)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주된 교육대상으로 초·중등학교에 평생교육원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평생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함.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산업교육원 등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1조	학력 인정	-정규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초, 중, 고등학교/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방송통신대학 등
			학력 미인정	-일정기준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교육감에 등록가능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2조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차원의 기관		삼성중공업공과대학, 삼성전자공과대학, 현대중공업사내대학, KDB 금융학교 등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원격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기관	사이버학원 및 사이버 교육원 등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으로 전문대·대학졸업과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5조	-사업장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6조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시민, 운동)연합, YMCA, 운동본부 등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7조	-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인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기관과 방송을 행하는 법인의 별 평생교육기관		신문사·방송사 문화센터(아카데미) 등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기관		기업체연수원(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산업교육기관 등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4.

<표 2-2> 평생교육기관 유형(계속)

◆ 타법령에 의한 평생교육기관		
기관유형	설립근거	기관소개
평생직업교육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교교과 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주민자치기관	행정자치법령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시설로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등에 관한 사무를 포함함 -사·군 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법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 사·연구·학습·교양 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국립박물관(미술관), 공립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대학박물관 (미술관)이 해당됨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수행 내용 중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을 포함함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문화의 집 등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하나로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 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활동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중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 는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사·군·구에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어아동(정보)선데 등
여성 관련 시설	여성발전기본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을 교육하기 위한 여성관련 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 영할 수 있음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육성전담기구,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	-노인교실 등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 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 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 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 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다문화가족 관련 시설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장관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하여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전문 인력을 두어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 육·상담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직업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연수기관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연수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철도인력개발원, 농업연수원, 병무청 교육담당관실, 교육인적자원연수원 등)
	각 법령	-평생교육법이 아닌 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업체, 금융투자업 등의 연수기관(인력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원 등)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 위주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평생교육실천협의회,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사(재)단법인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 관련 단체	청소년기본법 / 사(재)단법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 관련 단체	여성발전기본법 / 사(재)단법인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회 등
노인 관련 단체	노인복지법 / 사(재)단법인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사(재)단법인	-경제, 노동, 인권, 환경, 교육, 소비자, 여성, 평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시민성함양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4.

###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임(평생교육법, 제31조).
- 이 평생교육시설은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밖의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 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 (권두승, 최운실, 2014).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학교단계별 기준에 의하여 ① 초등학교 단계의 공민학교, ② 중등교육 단계의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중·

고등학교 과정), 산업체 부설학교 및 특별학급,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③ 고등교육 단계의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 각종학교(대학과정) 등이 있음. 이외에도 특수학교, 소년원 학교 등도 각 학교 단계별로 정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포함됨(권두승, 최운실, 2014).

- 이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평생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하여야 함. 또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고교이하 학력인정시설과 학력미인정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장이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게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의 시설임(권두승, 최운실, 2014).
- 특히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각급 학교단위에서 지역사회의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는 형태의 교육임.
- 평생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각급학교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평생교육법]**

-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초·중등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어학원, 정보사회교육원, 여성 사회교육원, 미술디자인교육원 등이 있음(권두승, 최운실, 2014; 김진화 외, 2011).

**(3)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기업 내에 설치된 시설로 기업의 직원 가운데 대학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없이 일정기간 사내교육을 이수하면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고등교육차원의 고등교육기관임.
- 사내대학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근로자에게 교육·훈련시키는 동시에 근로자 스스로가 필요한 교육훈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임(권두승, 최운실, 2014). 따라서 기업체의 근로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고도 일하면서 배우고, 학습결과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 (4)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보통신기술(컴퓨터, 통신, 위성통신, CATV 등)을 활용한 사이버 공간을 주 학습장으로 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임.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및 불특정 다수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격교육이 교육기회 평등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에서 강조하고 있음.

## [평생교육법]

-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분류할 수 있음.

&lt;표 2-3&gt;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학력인정 여부	시설유형	근거법령	구별기준
학력 미인정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받고, 30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는 시설 -사이버학원 및 사이버교육원 등
학력 인정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교육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기관으로 교육부장관의 인가 필요 -영남사이버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교 등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4.

## (5)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거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산업체, 유통업체 문화센터 등)의 경영자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임. 이 기관은 주로 기업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생교육기관임.

**[평생교육법]**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3.29.>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백화점 문화센터이며(권두승, 최운실, 2014),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375개(유통업체문화센터, 349개, 산업체부설, 43개)의 기관이 등록되어 있음. 교육과정(전국 33,135개)은 주로 예체능계열(16,875개), 교육계열(13,152개), 인문계열(1,929개), 공학계열(468개), 사회계열(337개), 자연계열(325개), 의약계열(4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6)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말 그대로 시민단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사항으로, 평생교육법 제36조 제2항에서는 시민단체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평생교육법]**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시민단체의 자체 회원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 시민사회단체는 그 활동영역에 따라 시민사회, 지역자치·빈민, 사회 서비스, 환경, 문화, 교육·학술, 종교, 노동·농어민, 경제, 국제 및 기타의 11개 영역을 나눌 수 있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시민사회단체로는 서울YMCA(1903)를 꼽을 수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주된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임(권두승, 최운실, 2014).

### (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해야 하는 임무를 부담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 평생교육법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음. 이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언론기관의 종사자를 제외하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평생교육만을 뜻함.

####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하여 동법시행령(제66조)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에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 신문 및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와 “방송법 제2조 제1호의 따른 방송을 행하는 법인(지상파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4.6.30.>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8)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30.>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 이런 평생교육시설은 민간자본을 통하여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하고 우수한 민간교육훈련기관을 육성함으로써 교육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교육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 평생교육법 제38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 사업을 적극 진흥·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함.

###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이상의 일반 평생교육시설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로 구분되며,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학교형태는 교육감에 등록, 사내대학 형태 및 원격대학 형태는 교육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함.

<표 2-4> 평생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학력인증여부

평생교육기관 유형	설립근거	학력인증여부	설치요건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 교육법 제31조	학력인정	교육감에 등록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등록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 교육법 제32조	학력인정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평생 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48조	학력인정	교육부장관 인가
		학력미인정	교육감에 신고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 교육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64조	"	교육감에 신고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 교육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65조	"	교육감에 신고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초·중등학교 대학(교)	평생 교육법 제30조	교육감에 보고
			교육부장관에 보고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평생 교육법 제37조 동법시행령 제66조	"	교육감에 신고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 교육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67조	"	교육감에 신고

## 2)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

-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는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 6대 영역을 근거로 각 영역별 하위영역을 규정하고 각 영역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명시하여 이해를 돕는 것을 말함(김진화, 고영화, 2009). 즉, 평생교육 6대 영역인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을 대분류로 설정하여 정의하고, 각 영역별로 3개의 중분류를 포함시켜 총 18개의 중분류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 예시를 제시함.



<그림 2-1> 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표

자료 : 순천평생학습강좌종합정보 홈페이지, 2014.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6대 영역의 기초문해교육은 언어적 기초와 활용에 관한 영역이고, 학력보완교육은 학력 조건과 인증, 직업능력교육은 직업준비와 직무 역량개발에 관련된 영역,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에 관한 영역, 인문교양교육은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에 관한 영역, 시민참여교육은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에 관한 영역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음.

&lt;표 2-5&gt;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정의

6대 영역	프로그램 정의
기초문해교육 (언어적 기초와 활용)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학력보완교육 (학력 조건과 인증)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와 직무역량개발)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향유와 활용)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인문교양교육 (교양확장 및 소양개발)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시민참여교육 (사회적 책무성과 공익적 활용)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자료 : 순천평생학습강좌종합정보 홈페이지, 2014.

### (1) 기초문해교육

- 기초문해교육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득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의미함(김진화, 고영화, 2009).
- 하위영역으로는 문자해득 프로그램, 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문해학습계좌 프로그램으로 분류함(김진화, 고영화, 2009).

### (2) 학력보완교육

- 학력보완교육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인증 평생교육을 말함(김진화, 고영화, 2009).

- 하위영역으로는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으로 분류함(김진화, 고영화, 2009).

### (3) 직업능력교육

- 직업능력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함(김진화, 고영화, 2009).
- 하위영역은 직업준비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으로 분류함(김진화, 고영화, 2009).

### (4)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을 말함(김진화, 고영화, 2009).
- 하위영역은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으로 분류함(김진화, 고영화, 2009).

### (5) 인문교양교육

- 인문교양교육은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함(김진화, 고영화, 2009).
- 하위영역은 건강심성 프로그램,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함(김진화, 고영화, 2009).

## (6) 시민참여교육

- 시민참여교육은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김진화, 고영화, 2009).
- 하위영역은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으로 분류함(김진화, 고영화, 2009).

&lt;표 2-6&gt; 6진 분류에 의한 프로그램 유형분류

6대 영역	18대 영역	정의	프로그램 예시
기초문해교육	문자해득 프로그램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 한글교실(초급) - 한글교실(중급) - 학습계좌 미인정 한글강좌
	기초생활기술 프로그램	문자해득 후 한글을 응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다문화교육 - 가족 문해교실 - 한글교실(고급) - 한글 응용교육
	문해학습계좌 프로그램	초등학력인증 문해교육기관에서 문해학습자가 초등학력을 인증받기 위해 이수해야할 소정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초등학력인증과정 - 학습계좌제신청문해강좌 - 귀화인한국어교육
학력보완교육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 초등학력인증과정 - 초등교과연계강좌 - 중입검정고시강좌 - 과학교실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 중고생교과연계강좌 - 고입검정고시강좌 - 대입검정고시강좌 - 진로강좌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 독학사강좌 - 학점은행제강좌 - 시간제등록강좌 - 대학 비학점강좌
직업능력교육	직업준비 프로그램	특정 직업에 새롭게 취직하기를 희망하며 성공적인 창업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기능을 획득하고 관련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인력양성과정 - 창업관련과정 - 취업준비과정 - 재취업정보교육
	자격인증 프로그램	특정 직업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여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외국어자격인증 - 지도사양성과정 - 자격증취득과정 - 자격인증과정

	현직직무역량 프로그램	현직 종사자에게 보다 발전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게 하며, 관련 기술과 기능을 습득하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직무연수</li> <li>- 전문직무연수</li> <li>- 평생교육사 연수</li> </ul>
문화예술 교육	레저생활스포츠 프로그램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육활동 및 전문적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저활동강좌</li> <li>- 생활스포츠강좌</li> <li>- 스포츠예술활동</li> <li>- 수영·골프강좌</li> <li>- 밸리댄스교실</li> <li>- 활쏘기</li> </ul>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생활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선아트강좌</li> <li>- 시진예술강좌</li> <li>- 천연염색강좌</li> <li>- 생활공예강좌</li> <li>- 노래교실</li> </ul>
	문화예술향상 프로그램	문화예술작품 및 행위를 의미있게 체험하며 문화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오나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무용</li> <li>- 미술·서예지도</li> <li>- 문화예술관람</li> <li>- 도자기·공예</li> <li>- 연극영화</li> </ul>
인문교양 교육	건강심성 프로그램	현대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신체 건강에 필요한 활동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치료</li> <li>- 종교교육</li> <li>- 식생활교육</li> <li>- 생활의료교육</li> <li>- 보건교육</li> </ul>
	기능적 소양 프로그램	일상생활의 적절한 역할수행과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과 관련된 기능적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할수행교육</li> <li>- 예절교육</li> <li>- 정보인터넷활용</li> <li>- 생활외국어</li> <li>- 가정생활</li> <li>- 생활한자</li> </ul>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	전인적 품성과 지혜를 갖춘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문학강좌</li> <li>- 과학일반강좌</li> <li>- 역사·전통강좌</li> <li>- 철학·행복학강좌</li> <li>- 독서강좌</li> </ul>
시민참여 교육	시민책임 프로그램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을 촉진 및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li> <li>- 양성평등교육</li> <li>- 다문화이해</li> <li>- 주민자치교육</li> <li>- 환경생태체험강좌</li> </ul>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의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육성하며 그들의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리더양성</li> <li>- 평생학습리더양성</li> <li>- 평생학습상담자양성</li> <li>- NPO지도자과정</li> <li>- 지역문화해설사과정</li> </ul>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현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조직 및 공익적 사업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참여를 촉진하며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지원하고 인증하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동아리교육</li> <li>- 평생교육자원봉사</li> <li>- 환경실천교육</li> <li>- 평생학습네트워크</li> </ul>

자료 : 순천평생학습강좌종합정보 홈페이지,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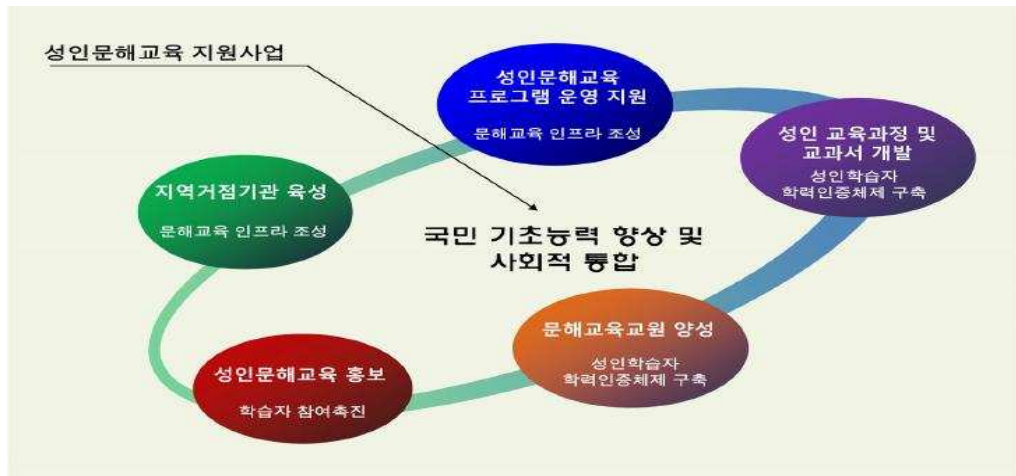
## 2. 문해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

### 1) 문해교육기관의 개념

#### (1) 문해교육의 정의

- 1950년대 국가적 프로젝트로 실시되었던 ‘문맹퇴치 5개년 계획(1954~1958년)’ 이후 정부는 문해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하였음. 문해교육은 대부분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을 소극적이었음. 1999년 평생교육법 제정 이후 국가 영역에서 이루어진 문해교육에 대한 정책은 재정 지원, 연수 지원 등에 한정된 것이었음.
- 문해능력은 단지 글을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할 생애기초능력임.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읽고 쓰는 능력이 전혀 없거나 글자를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성인인구는 26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가 기초 능력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음(국립국어원, 2008).
-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식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그 소양으로 문자를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 외에 IT 능력, 외국어 능력, 기술 문화에 대한 이해력, 기업가 정신 및 사회적 기술이 필요함(EU ‘유럽에서의 평생교육의 실현’).
- 또한 일상활동 및 가정, 일터, 지역 사회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넓힐 수 있는 능력이 문해능력임(OECD, 국제성인문해조사).
- 또한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주재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적 장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성인문해교육 대상자는 약 140만명의 외국인 주민으로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음(행정안전부, 2012).

- 성인문해는 문화 종교발전, 사회경제발전 및 과학기술 발전, 정치발전과 함께 필연적인 과제이며 사회변화와 생활세계 속에서 따라 변화한다는 점을 통해 비문해자의 숫자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임, 문해를 단순한 문자해득수준에서 생활 문해로 확대할 때 문해자 비율은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임.
- 평생교육법 제2조에서는 평생교육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함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문해교육을 평생교육의 중요한 한 영역으로 삼고 있음.
- 문해교육은 문자해득을 포함하여 성인 기초교육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서의 문해교육을 ‘문자해득교육’이라 규정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됨.
- 제2조(정의)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함.
- 평생교육법에서는 문해교육에 대한 학력인정을 중학교 과정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별로 볼 때 문해교육은 성인들을 위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음.
- 이에 2006년 교육부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성인교과서 개발, 문해교사 연수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했으며(변종임 외, 2006; 이경아 외, 2007). 2001년부터 이루어진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을 계기로 문해교육에 관심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등장함.
- 국민기초능력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문해·저학력 성인에게 제2의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문해학습자 학습 환경 구축을 위한 ‘문해교육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역 거점기관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음.



<그림 2-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개요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5.

## (2) 문해교육의 법적 규정

- 평생교육법은 문해교육을 첫째,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규정으로 평생교육법 제39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39조 3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 이는 문해교육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문해교육의 공공성 확보하고 저학력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기회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조항이며 문해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문해교육에 대한 효과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 평생교육법 제 39조 2항에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시도교육청 관할의 학교 등의 시도교육청 소속의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이고,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은 학교 외 비영리 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것.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정 받기 위한 시설 기준, 교원 기준, 교육과정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문해교육에 대한 “학력 인정”에 대한 규정으로 평생교육법 제 40조에는 평생교육법 제 39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 39조에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정을 교육감이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해교육에 대한 학력 인정의 권한을 교육감이 갖게 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에는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및 문해교육교원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를 평생교육법에서 명시된 국가단위 평생교육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에 두고 있으며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의 ‘문자해득교육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허준, 2008).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프로그램은 교육수준별로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문해 1단계,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의 문해 2단계, 초등학교 5~6학년 수준의 문해 3단계, 중학 수준으로 구분함, 2013년 총 964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으며 이 중 문해 1단계 프로그램이 494개(51.2%)로 가장 많았으며 문해교육 학습자 역시 문해 1단계 프로그램 참여 학습자가 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7>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교육 수준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2013)

구분	단위: 개, %				
	문해 1단계	문해 2단계	문해 3단계	중학교 수준	합계
프로그램	494(51.2)	233(24.2)	150(15.6)	87(9.0)	964(100.0)
학습자	9,438(52.0)	4,214(23.2)	2,773(15.3)	1,729(9.5)	18,154(100.0)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201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자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이 전체 8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상자 혼합 프로그램이 5.6%, 외국인 프로그램이 4.5%를 차지하였으며 내국인 대상 프로그램에는 16,151명으로 전체 참여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음(2013 평생교육백서, 2014).



<그림 2-3>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참여 학습자 현황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 2) 문해교육기관의 운영 조건

### (1) 문해교육의 학력 인정

- 평생교육법에서는 문해의 의미를 '문자해득교육'으로 좁게 규정하고 있지만 문해 수준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학력 인정을 해주도록 하고 있어 평생교육법상 문해교육은 우리나라 의무교육 수준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의 학교교육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설치 및 운영 또는 지정 받기 위한 교육과정에 대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6조 3항에는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세부 기

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해교육의 교육과정이 학교교육에 준하는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 평생교육법시행규칙 제 22조에는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성인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문해교육 관련 조항이 마련되면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음. 평생교육법 제 40조에 의거한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는 18세 이상 성인학습자가 시도교육청이 설치 또는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학력충족여부 심사를 거쳐 초중등학교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임,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제 구축을 지원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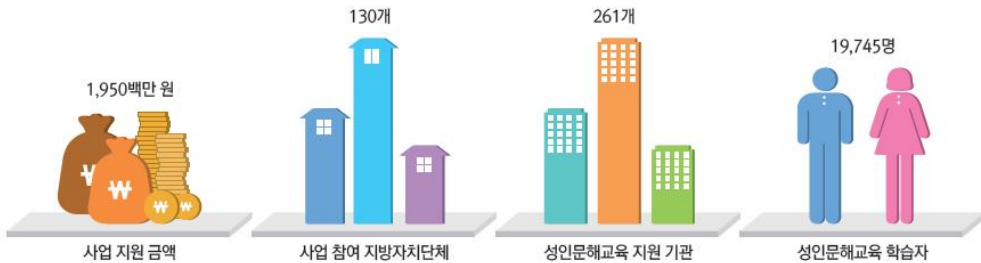


<그림 2-4>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제도 추진체제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5.

-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교육청,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함.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 76조에 의거하여 문해교육 전바나에 걸친주요 안건을심의하는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평생교육법 제 70조

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 있는 교원을 양성하며, 성인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



<그림 2-5>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 지역의 전문성 있는 문해교육기관 육성을 목적으로 2009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부터 지역거점기관 육성을 시작하였음. 성인학습자 학력인정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 추진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개 시도교육청, 문해교육기관으로 구분함.
- 2009년 23개를 시작으로 2012년 39개 기관을 지원 육성하였으며 2012년에 선정된 39개 기관은 '전국 성인문해교육시화전'을 전국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기관 운영 역량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지역 교원 워크숍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역 문해교육의 주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시작된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인학습자 학력 인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성인을 위한 맞춤형 교과서 개발, 문해교육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 시도교육청 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완성단계에 이르렀음.
- 2006년 소망의 나무(1단계), 배움의 나무(2단계), 지혜의 나무(3단계) 교과서 개발을 시작으로 2012년 중학과정 성인문해교과서(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가 완성되었음.
- 2009년 초등과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교육 과정이 고시되었고 2012년 중학과정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고시함에 따라 성인을 위한 교육 내용의

를 제시하였으며, 2013년에는 2006년에 개발한 초등과정 성인문해교과서(총 12권), 교사용 지도서(총 3권), 워크북(총 3권)에 대해 교과내용의 시의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서 단원체계를 재구성하고 교육내용 재편하는 등 전면 개정을 추진하였음(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 2011~2012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인학습자자 학력인정제도’의 기반을 완성하고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학력인정 기회를 확대를 위해 시도교육청협의회,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양성, 중학교과정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음.
- 2013년 기준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의 134개 문해교육기관, 4,700여명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1,295명의 학습자가 초등학력 인정을 받았음.

### 3) 문해교육기관의 운영 사례

#### (1) 제주 문해교육기관 운영 현황

- 현재 성인문해교육 잠재 수요자인 전체 인구(20세 이상) 중 의무교육인 중학교 학력 미만의 성인은 577만명(15.7%)에 비해(통계청, 2010). 제주지역의 경우 20세 이상 인구(388,403명)중 중학교 학력 미만의 성인은 73,162명(18.8%)으로 전국 대비 2.1% 높게 나타났음.
- 제주지역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단체는 모두 22개 기관이며 성인 문해교육기관은 대체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읍면 지역에는 성인문해교육기관이 미비한 상태임(홍숙희, 2014).
- 제주지역에서 국가차원의 성인문해교육지원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06년 동려평생학교, 2007년 서귀포오석학교와 제주장애인야간학교가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되어 왔음. 특히 2014년에 제주시 3개소, 서귀포시 2개소 등 5개소로 확대되어 지원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제주지역 내 문해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제주지역의 성인문해교육은 민간차원의 대중계몽운동을 비롯한 시민 사회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제주지역의 특별한 사례는 바로 자원활동에 의한 야간학교의 등장으로 동려야간학교와 서귀포오석학교, 장애인야간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들 수 있음(홍숙희, 2014).

<표 2-8> 제주지역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2013)

구분	기 관	구분	기 관
1	국제가정문화원	12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	동려평생학교	13	서귀포오석학교
3	등하학교	14	제주다문화가정센터
4	서귀포반석교회	15	제주시평생학습관
5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제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서귀포시평생학습관	17	제주이주민센터
7	서부종합사회복지관	18	제주장애인야간학교
8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19	제주종합사회복지관
9	성산원한글문화교실	2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0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1	제주시 연동주민자치센터
11	영락종합사회복지관	22	서귀포시 천지동주민자치센터

출처: 홍숙희(2014), 5.

### ■ 동려야간학교

- 동려야간학교는 1975년 10명의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의 친목회인 동려회가 직업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1975년 4월 중학과정의 야간제 수업을 개설하면서 시작됨.
- 1978년 첫 졸업식에서 5명을 배출한 이래 1992년 초등부과정 개설, 1996년 고등부 과정을 개설하여 1999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함, 2006년 국가차원의 제주지역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2012년 초등학력을 인정받는 학력인정프로그램 기관으로 지정, 2009년 성인문해교육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제주지역 성인문해교육에 많은 기여를 함.

- 동려평생학교를 비롯하여 동려청소년학교, 동려교육문화원, 동려봉사단을 뒤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못한 청소년 및 도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활동 및 봉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 ■ 서귀포 오석학교

- 서귀포오석학교는 1967년 중학교 과정을 시작으로 정규과정의 교육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둬.
- 교육 중점 사항으로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통한 학습자들의 소속감 고취 및 검정고시 합격을 통한 상급학교 진학 유도 및 한글 기초교육을 가르치는데 역점을 둬.
- 1989년 성인문해교육을 위한 초등과정 한글반을 개설, 1991년 한글반과 초등검정반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1998년 초등과정에서 새날반 개설하고 초등검정반 명칭을 여울반으로 변경함으로써 초등과정은 한글반, 새날반, 여울반 체제로 운영하여 서귀포시 지역의 성인문해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 장애인 야간 학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제주지역 산하조직으로 2004년 설립되어, 배우지 못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성인중증장애인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도와줌
- 2006년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 인가와 함께 문해정보화교육기관으로 선정. 2008년에는 노래밴드 특별활동반 개설, 2009년에는 영어반 개설을 비롯, 웹프로그램 개발 등 IT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음.
- 교육과정으로는 문해과정, 초등과정, 중등과정, 고등과정, 외국어반 등 5개로 구분하였으며 검정고시대비반, 문해정보화교육, 외국어교실,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음(홍숙희, 2014).

## (2) 군산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례

-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평생교육 정책 목표 확대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사회통합 및 교육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 사업 개요
  - 학습시간 : 매주 월~ 목요일(주 4일~8시간)
  - 문해교육사 : 29명 / - 학습인원 : 691명
  - 학습장 : 41개소 52개 과정(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
  - 사업비 : 500백만원/년(군산시, 전북교육청, 기업 등)

### ■ 추진 경과

- 1992년 전국 문해교육 전국 최초 실시(우리배움터)
- 2005년 찾아가는 문해교육 최초 실시(시민교육센터)
- 비문해 ZERO 학습도시 조성사업 실시(2008)
- 군산시 문해교육 통합 운영 및 문해교육 최우수지자체 선정(2010)

### ■ 운영 내용

- 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정 운영(문해교과서)
- 건강교실, 취미교실 및 각종 문화체험 프로그램, 학교 체험 및 문해한마당(학예발표) 등 문화예술교양교육 실시
- 방학 학습을 통하여 방학과제물 책자 발간 및 중도포기자 및 수료자를 위해서 학습지 배포 등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함.
- 문해교육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주1회 연수(교수법,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실시
- 동하절기 방학(6주) 교사 특별연수 실시 및 연 1~2회 워크숍 실시

■ 기대 효과

- 문해교육의 인식개선 및 평생학습의 기초역량 강화 및 지역 자원의 효율적 연계를 통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모델을 제시함
- 문해교육을 통한 교육소외계층의 사회참여 확대 및 문해교육사 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교육효과 향상 및 학습자의 체계적 관리 및 지역 통합 교육 환경을 마련함(평생교육정책포럼 자료집, 2011).

(2) 서울수색초등학교 평생배움교실 사례

■ 주요 현황

기관명	서울수색초등학교 평생배움교실
기관연혁	2011. 3. 1 성인대상 학력인정 서울수색초등학교 인가 2011. 4. 8 제1회 입학식(1학급 15명)
설립 목적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사신분들에게 희망의 전당이 되어 주기 위함
기관프로그램	초등3단계, 예절교육, 한자교육, 독서교육, 봉사활동 등
주요 사업	동화책 읽기, 편지쓰기대회, 동화구연대회, 나의 주장 발표대회, 방학캠프를 통한 정보화 소양 기르기,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교실
기관이 속한 지역사회의 특성	수색역 근처의 주택가가 주 학구로 생활수준이 낮은 편이며 맞벌이 부부가 많으므로 문해교육 대상자들이 집안일에 얽매이게 됨
교원 현황	교직원 현황: 교장 1명, 교감 1, 강사 1
시설 현황	평생배움교실 1(기본시설 갖춤)

■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현황

교과 영역	국어	교재 읽고 독해하기, 워크북을 이용한 독해 및 쓰기 학습, 받아 쓰기, 일기쓰기, 편지글 쓰기, 동화책 읽고 내용 토론 등
	사회	교재내용 공부, 지하철 노선을 활용한 지리 영역 공부, 공익광고를 통한 사회문화의 이해(우리나라 및 외국)
	수학	구체물을 활용한 연산, 학습지 풀기, 산가지, 놀이학습 판을 활용한 학습
	과학	교재내용 공부, 과학실험실을 활용한 간단한 실험
	영어	교재내용 공부, 기본 영어회화(인사말, 수익하기 등) 지도 영어노래 및 첸트를 활용한 지도

	기타 과목	미술 - 그리기, 만들기(부채, 사진첩, 염색) 음악 -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발표회
	재량활동	컴퓨터 소양 능력 기르기(그림판 활용, 이메일 계정 만들기)
	특별활동	체험학습을 통한 문예체 교육(영화관람, 고구마 캐기, 수목원 생태 환경교육 및 체험) 동료학습자들과의 친화력 기르기(적응활동) 1인1역 활동을 통한 봉사정신 기르기(당번활동)

- 서울수색초등학교 평생배움교실은 2011. 4. 8 제1회 입학식을 통해 15명의 초·중·고3단계 학습자로 출발하였음.

### 3.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개념과 운영 조건

#### 1)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개념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개념은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과 구분되어 가지는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음.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결과 및 경험이 일반 정규학교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반면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은 미진학 근로청소년 및 성인에게 학교교육의 보충교육, 문해교육, 인문교양 등의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기관임 (박태준, 2001).
- 평생교육법에 의한 8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 중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은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있음.
- 특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사정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및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과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구분됨.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일정기준 이하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로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 등록함. 또한 학교의 형태를 지닌 교육시설임을 감안하여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하였으나 정규학교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정규학교의 인허가 절차보다는 등록절차가 까다롭지 않음(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 2)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조건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조건은 다음과 같음.

### (1)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 제31조, 동시행령 제26조, 동시행규칙 제11조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5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설비를 말한다.

1. 학습 시설·설비
2. 자료실
3. 관리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비의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학교로서 교사의 가르칠 의무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위해 시설·설비기준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에게 등록함(충청남도교육청, 2008). 최소한의 시설은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자료실, 관리실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갖추어야 함.

- 시설의 등록요건(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2)은 다음과 같음.

<표 2-9>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구분	시설·설비 기준
1. 학습시설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은 49.5㎡ 이상)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 설비
2. 자료실	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나. 관리실과 겸용할 수 있음
3. 관리실	1실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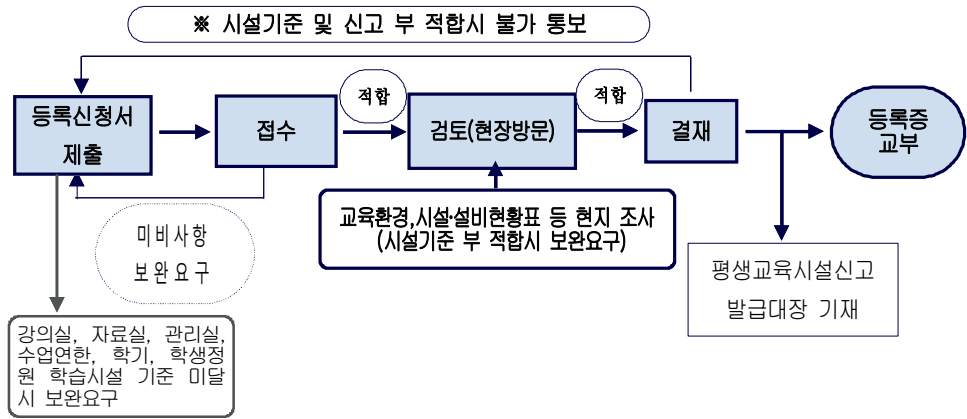
- 수업실은 설치 학급 수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수업실 설비 기준은 학교교구·설비기준 「보통교실」설비기준에 준함(강원도교육청, 2009).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 2-10>과 같음.
- 학습에 필요한 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 및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함. 학생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보건실 1실(25㎡ 이상), 특별교실 1실(25㎡ 이상)의 시설·설비를 권장함(강원도교육청, 2009).
- 자료실은 도서 및 자료는 500권 이상 보유하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교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실과 겸용하여 사용 가능함. 관리실은 자료실과 겸용할 경우에는 25㎡이상을 권장함(강원도교육청, 2009).

<표 2-10>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수업실 설비 기준

수업실(보통교실) 설비의 기준				
구분	등록시설	학력인정 지정시설		비고
		초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	
1	○	칠판, 교탁, 게시판		
2	○	학생용 책·걸상		
3	○	교사용 책·걸상		
4	권장	스피커		
5	○	카세트녹음기(라디오, CD경용)		
6	○	컴퓨터(멀티미디어급)		
7	○	프로젝션 TV(43" 이상), 컴퓨터 전용모니터(38" 이상), TV 수상기(33"이상), LCD프로젝터(스크린 포함) 택1		
8	○	VCR		
9	○	기자재보관함		
10	○	청소용구 보관함		
11	권장	실물화상기	실물화상기, 투시환등기(권장)	
12	권장	컴퓨터용 프린터	컴퓨터용 프린터(권장)	
13	권장	냉, 난방시설	냉, 난방시설(권장)	
14	권장	사 물 함	사물함(권장)	
15	권장	진공청소기(권장)	진공청소기(권장)	
16	권장	정수기(권장)	정수기(권장)	
17		LAN시설		
18		자료보관대		
19		작품전시대		
20		책꽂이, 시계, 거울		
21		모듬 학습용책상		
22		지 구 본		
23		흙 진 기		

자료: 강원도교육청, 2009, 35.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교육감을 등록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맞는 경우 등록증을 교부함. 즉, ① 설치계획서를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제출→접수→검토결과 통보(10일 이내)→시설 및 설비 완비후, ②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개설예정일 15일 전)→검토(현장방문)→결재→등록증작성→발급대장기재→등록증교부(10일 이내)의 절차로 이루어짐.



<그림 2-6> 학교형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록절차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2008, 76.

- 등록신청 구비서류는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등록신청서에는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개설예정일을 기재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 운영규칙은 명칭, 목적 및 위치, 교육과정 및 정원,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및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첨부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기타서류는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시설·설비 현황표, 시설배치도, 재산목록 및 그 입증서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설치자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                          |            |
|--------------------------|------------|
| 1. 명칭                    | 2. 목적      |
| 3. 위치                    | 4. 교육과정 편성 |
|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
| 6. 시설·설비의 설치내역           | 7. 개설예정일   |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 1. 명칭, 목적 및 위치     | 2. 교육과정 및 정원 |
|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 4. 과정수료의 인정  |
| 5. 교육기간 및 휴강       | 6. 학습비       |
| 7.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1. 운영규칙   | 2. 교육과정 편성표 |
|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             |
| 4. 시설·설비 현황표  | 5. 시설배치도    |
| 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
| 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1.1.27>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표로 같음함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같음함
	시설·설비 * 시설·설비 현황표로 같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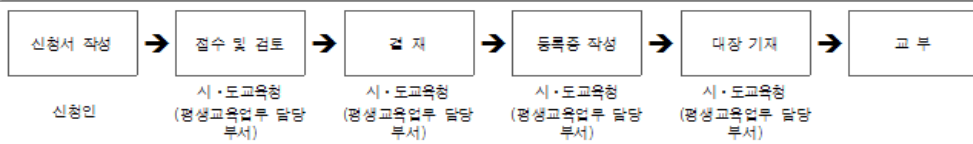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교육감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규칙 1부</li> <li>2. 교육과정 편성표 1부</li> <li>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li> <li>4. 시설·설비 현황표 1부</li> <li>5. 시설배치도 1부</li> <li>6.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li> <li>7.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li> </ol>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물대장 등본</li> <li>2. 토지대장 등본</li> </ol>	

처리절차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 시설 및 설비조사서

○○○평생교육시설

### 1. 시설

시 설 명	현 보유		적정여부
	실수	면적 (㎡)	
강 의 실			
사 무 실			
자 료 실			
다 목 적 실			
샤 위 실			
화 장 실			

### 2. 설비

구 분	현 보유
급 수	
냉·난방	
채 광	
조 명	
환 기	
방 음	
소 방	

### 3. 기타

구 분	기 준	현 황	적정여부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책상 및 의자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청 검토조서

### 1. 신청개요

평생교육시설명	설치자	위 치	신청내용	비고
○○○	○○○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	신규신고	

### 2. 검토내역

번호	검 토 사 항	검토결과	적합여부		비 고
			가	부	
1	명칭(학교명칭 사용안됨, 중복여부)	적 정			
2	시설·설비기준 수업실 1실 이상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자료실 1실 이상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 관리실 1실 이상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 조명시설 환기 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등	적정			출장복명서 참조
3	설치자 자격 개인 법인(이사회회의, 정관등 검토)	이상없음			▶신원조회 : ▶직권취소 :
4	교육과정(수업연한, 학기, 수업일수, 수업시간수, 학생 정원, 학급수, 학급편성)	적 정			운영규칙
5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 (설치계획의 타당성, 재산 등)	적 정			운영규칙
6	건축물용도 - 건물의 용도는 적정한지? ※ 2종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생활편 익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업무시설	적 정			

### 3. 검토결과 적합여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기준이 적합하므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수  
리하고자 함

○○○○.○○.○○

검토자 직 :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 ○○○ (인)

## (2)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4조임.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관할청에 보고해야 함. 설치대상은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 설치 가능하나 현재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 설치보고서 제출서류는 설치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설치보고서에는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시설·설비 현황,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개설연월일 등을 기재함(평생교육법 별지 제8호 서식).
- 운영규칙은 원장, 위원회 등 조직, 설치·운영 과정, 학습자의 활동, 포상, 회계 등에 관한 규정 포함함.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등록,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공개 강좌 등 다양한 비학위과정의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에 노력하도록 함(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4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에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 7. 28>

###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

보고 학교	학교명	학교장
	위치	전화번호
학교 부설 평생 교육 시설 내역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운영규칙	* 별지에 기재
	교육과정	* 별지에 기재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별지에 기재
	시설·설비 현황	* 별지에 기재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개설연월일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학교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장관  
(            ) 교육감 귀하

#### 작성 방법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및 시설·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은 별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 (3)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의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 제33조, 동시행령 제48조, 49조, 동시행규칙 제17조임.
-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인터넷강의 등 원격시설을 설치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함.
-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습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 인터넷 강의, 화상 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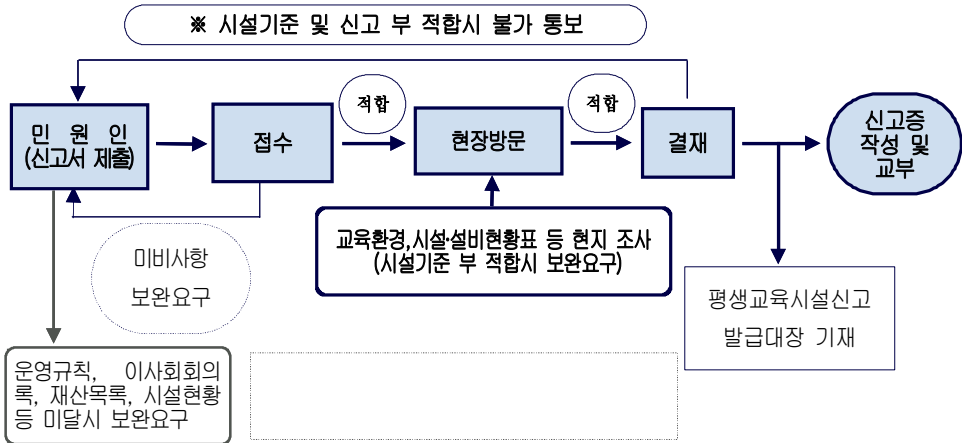
####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 신고서류는 시설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시설신고서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평생교육사 배치 등을 기재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운영규칙은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 기타서류는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등을 첨부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가 평생교육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역교육지원청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10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줌. 이와 같은 절차는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도 유사함.



<그림 2-7> 평생교육시설 신고 처리 절차

자료: 충청남도교육청, 2008, 121.

- 설치자 지위승계는 설치자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 폐쇄통보는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6.30.>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정원
3. 입학·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1.1.27., 2013.3.23., 2014.7.28.>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설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1.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3.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4. 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④ 영 제49조제3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⑥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승계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따른다.

⑦ 영 제49조제4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1. 인계인수서
2.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3.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5.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⑧ 교육감은 제6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인수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9., 2013.3.23., 2014.7.28.>

1. 인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인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뒤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시·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 (4)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35조, 동시행령 제64 조임.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 백화점문화센터 등 일정규모(종사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 경영주가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함.

##### [평생교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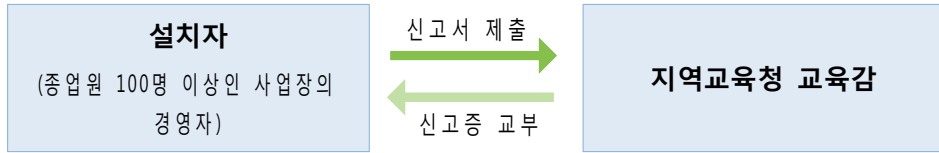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운영요건은 사업장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이어야 함.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 이유는 백화점 종사자수 최소규모와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참고함(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1.3.29.>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 신고절차는 설치자가 신고서를 신청하면 지역청 교육감은 신고서를 검토하여 신고증을 교부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준용함.



- 신고서류는 시설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 시설신고서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설비, 개설예정일, 평생교육사 등을 기재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준용).
  - 운영규칙은 명칭, 목적, 위치, 교육과정, 정원, 입학·퇴학, 수료와 상벌, 교육기간, 휴강, 학습비,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첨부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준용)
  - 기타서류는 위치도, 시설배치도, 시설·설비 현황표,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등을 첨부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준용).
- 설치자 지위승계는 설치자 지위승계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 준용).
- 폐쇄통보는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폐쇄후 잔여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하여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 준용).

#### (5)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평생교육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65조에 의거함.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가 소속 회원 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지역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함.

### [평생교육법]

####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중략)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설치자 자격은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로 한정함. 이와 같이 한정된 이유는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활동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고, 유명무실한 시민사회단체의 무분별한 교습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이5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님(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준용함.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②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6)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 제37조, 동시행령 제66조임.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역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함.

**[평생교육법]**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설치자 자격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된 정기간행물 중 일간신문·통신·주간신문 또는 월간잡지 발행자, 방송(지상파, 종합유선, 위성방송)을 행하는 법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이 5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함.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준용함.

**[평생교육법]**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4.6.30.>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2.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3.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②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7) 지식·인력개발사업 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식·인력개발사업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근거법령은 평생교육법 제38조, 동시행령 제67조임.
- 지식·인력개발사업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상은 일정한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역교육청 교육감에게 신고함.

**[평생교육법]**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운영요건은 지식·인력개발사업 경영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식·인력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

- 지식·인력개발사업(지식정보의 제공,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교육위탁,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 교육자문 및 상담,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할 것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준용함.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30.>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 이상의 평생교육시설 운용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1> 각종 평생교육시설 운영조건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b>설치자 요건</b>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100명이상 사업장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사업 경영법인
	법인 : 이사회 회의 또는 총회를 통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할 것을 명시 정관 목적 변경 후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목적 명시 후 제출(회의록 및 정관 변경안 공증) 개인 : 주민등록초본, 이력서 제출				
<b>신고대상 및 설치요건</b>	교육감에 신고	교육감에 신고	교육감에 신고	교육감에 신고	교육감에 신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 실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 실시 -10인 이상, 교습과정 30시간 이상 -정보통신기술(화상강의 인터넷강의) 등을 실	-사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의거 주주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설치자 자격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 통신,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	-설치자 자격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 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

	시하는 경우 -학원법 상 “원격학 원” 제외		③ 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조제1하에 따라 등록 한 월간잡지발행자 ②방송법 제2조제1호의 법인(지상파, 유선 , 위성 방송) ③ 「뉴스통신진흥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따 라 등록된 뉴스통신사 업을 경영하는 법인	진단 및 평가사업, 교 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 을 1년이상 경영한 실 적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교육대상	불특정 다수	당해 사업장 고객	일반 시민(성인)	불특정 다수(성인)	불특정 다수(성인)
학습비 및 환불규정	설차운영자가 신고하는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함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동영상 강의 : 서버 등 2. 전화 : 전화라인 3. 기타 : 해당 설비		-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③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평생 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전문인력	-		-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담) 5명 이상 확보		

자료: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 3)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사례

-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 중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1) 노들장애인야학

- 노들장애인야학은 교육의 기회를 놓친 장애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하기 위해 1993년 초·중등 2개 반으로 개교하여(김용욱, 2009), 2009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됨. 현재 학생수는 청소년(24세 이하) 1명, 성인 59명(2014년 4. 1 기준)이 등록되어 있음(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 운영될 때에는 야학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이 발휘됨. 첫째, 교육과정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 둘째, 한 학년도는 1학기과 2학기과 구분하고 1학기은 3월부터 8월까지, 2학기은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운영함. 셋째,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2회의 방학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교사회에서 결정함. 넷째, 매주 3일 수업을 실시함. 다섯째, 1일 4차시의 수업을 진행하고 45분 수업에 10분간 휴식을 함. 여섯째, 정규 교과 이외에 특별활동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함. 일곱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시간표는 교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 여덟째,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사회에서 결정함(김용욱, 2009).

- 학급은 초, 중, 고등반에 해당하는 청솔 1, 2반, 볼수레반, 한소리반이 있음. 수업은 국어, 사회, 수학 등 반별로 수업을 하고 철학과 인문학은 공통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특별활동으로는 미술, 음악, 연극 등을 함. 수업시간표를 보면 다음과 같음.

<표 2-12> 노들장애인야학 수업시간표(2014년 1학기)

	월	화	수	목	금
청솔1	사회 생활수학	과학 국어	(공통) 철학 & 인문학 공부	(특활) 미술 음악 연극	국어 수학
청솔2	생활수학 과학	사회 국어			국어 수학
볼수레	영어 국사	사회 과학			국어 수학
한소리	영어 국사	사회 과학			국어 수학

자료 : 노들장애인야학 홈페이지, 2015.

## (2) 질라라비아학

- 질라라비 장애인 야간학교는 대구 최초 장애인야학이자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서 2000년 개교함(김용욱, 2009; 장애인지역공동체 홈페이지, 2015). 질라라비아학은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육지원 및 사회참여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단체임(장애인지역공동체 홈페이지, 2015).

-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원칙은 노들장애인야학과 같이 8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될 때에는 야학의 형편에 따라 융통성이 발휘됨.
- 교육과정은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참여 가능함.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이 학력취득을 필요로 하는 성인장애인 대상 교육과정, 특별활동,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됨.

<표 2-13> 질라라비아학 교육과정

학력취득을 필요로 하는 성인장애인 대상 교육과정		
구분	과목설명	시간
검정고시 교육과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역사 6과목 (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 수준별 반 편성)	매주 월, 수, 금 3:30~4:30
문해교육	비문해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한글교육	매주 월 4:45~5:30
토론교육	장애학생들이 각자의 생각이나 경험을 발표하거나, 남의 생각과 경험을 듣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과 표현력을 기릅니다.	매주 수 6:30~7:15
미술교육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 감수성, 시각적 판단력을 기릅니다.	매주 금 7:30~8:15
특별활동		
동아리활동	노래모임: 합창을 통한 음악체험으로 정서를 함양합니다.	7월~10월 매주
	난타모임: 사물악기 체험으로 전통문화를 향유합니다.	7월~10월 매주
소풍	야학 구성원들의 단합을 위한 소풍을 봄, 가을(한 학기 합 번)에 다녀옵니다.	-
수학여행	매년 8월경 야학에서의 소중한 추억만들기 2박 3일 수학여행을 다녀옵니다.	-
질라라비의 밤	장애인도 문화생성의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 내에 알리려는 자리입니다. 매년 10월경에 야학 학생들이 준비하는 다채로운 공연들로 이루어집니다.	-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과정		
문화여가교육	연극: 연극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문화예술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연극을 통하여 자기표현의지와 방법,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사회성함양을 목적으로 함.	3월~12월 주 1회 (년 초 공지)
	사진교육: 사진교육출사를 통하여 주변 사물에 대한 관심과 표현의 즐거움,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 사진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과 비장애인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함	3월~12월 월 1~2회 (년 초 공지)
직업전환	지역사회 내 일자리 탐색과 복지일자리 사업 구현	3월~12월 매일 (년 초 공지)

자료 : 장애인지역공동체 홈페이지, 2015.

- 야학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일은 전적으로 교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지고, 교육내용, 방법, 평가 등 역시 교사의 교육관에 의해 수립되고 적용됨(김용욱, 2009).

### (3) 삼성실업학교

- 삼성실업학교는 1987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됨. 학생은 청소년(24세 이하) 38명, 성인 91명(2014년 4. 1 기준)이 등록되어 있음(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 교육과정은 국어전문반, 영어·한문 특별반, 컴퓨터반, 검정고시반으로 나누어 운영됨. 세부적으로는 국어전문반에 기초반, 중급반, 상급반이 있고, 영어·한문 특별반은 왕초보반, 중급반, 생활영어반, 컴퓨터반은 기초반, 검정고시반은 중검반, 고검반, 대검반으로 운영됨(삼성실업학교 카페, 2015).

### (4) 화천한옥학교

- 화천한옥학교는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통한 우리 문화 계승'을 목적으로 2004년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로 시작하여 2008년 '화천한옥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함(화천한옥학교 홈페이지, 2015).
- 화천한옥학교의 교육과정은 대목과정, 소목과정, 한옥체험프로그램, 자격증과정반, 건축CAD반이 개설됨(화천한옥학교 홈페이지, 2015).
- 대목과정은 집을 설계하고 지어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는 과정으로 만 63세 이하 성인 남녀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고, 교육기간은 6개월 과정으로 주 5일 수업(09:00~18:00)이 진행됨. 교육과정 개설은 년 4회(3, 6, 9, 12월) 실시됨. 소목과정은 만 65세 이하 성인 남녀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고 교육기간은 4개월 과정으로 주 5일 수업(09:00~18:00)이 진행됨. 교육과정 개설은 년 2회(3월, 7월) 실시됨(화천한옥학교 홈페이지, 2015).

- 주말한옥체험 과정은 매주 토요일 13시부터 일요일 12시까지(1박2일) 진행되고, 교육내용은 전통한옥 이해 및 조립, 전통문화, 전통공예, 전통음식 체험 등이 진행됨(화천한옥학교 홈페이지, 2015).
- 훈련 교·강사는 3명, 교육시설은 한옥체험동, 전통한복체험관, 전통음식체험관, 정자, 실습동, 강당, 기숙사 등을 갖추고 있음(HRD-Net 홈페이지, 2015).

## 4. 학력인정 평생교육 기관의 개념

### 1) 학력인정평생교육 기관의 개념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청소년, 즉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상실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교육기관임(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기초 지방자치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학교 외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해 각급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부여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보완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학령기에 받지 못한 교육경험을 이후의 시기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교육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로 구분되며, 학력인정을 위해서는 학교형태는 교육감에 등록 사내대학 형태 및 원격대학 형태는 교교육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함(국민권익위원회, 2011).

&lt;표 2-14&gt;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분류

시설	유형	관계법	설치요건
학교형태 평생교육 시설 중 학력인정 시설(교육감 지정)	각종 학교, 기술학교 등	평생교육법 제 31조	교육감에 등록
사내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	평생교육법 제 32조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 형태 원격교육 형태	평생교육법 제 33조	교육부장관 인가 교육감에 신고

## 2)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유형

### (1)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

- 학교형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근거함.

#### [평생교육법]

-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현재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8개 학교가 당시 문교부 지정 학력인정 사회교육 시설로 지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의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등장하게 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표 2-15>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역사적 변천

연대	교육시설의 발현형태	교육 목표
1950	국민학교 고등국민학교	국가건설을 위한 국민적 자질함양
1960	재건학교 향토학교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1970	노동야학	인력양성 및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80	사회교육시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1990	사회교육시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2000	평생교육시설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 자아실현, 창의력 및 문제해결능력 향상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 1970년대부터 소외계층 적응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이어져 왔고 2000년대부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발현됨.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주된 교육대상은 소외계층이며 생산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2009)은 교육 소외 계층의 비정규 교육 경험을 인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에 비해 정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교교육 이외 학습 경험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인정하고자하는 움직임을 설명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시사함.

## (2)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 제32조에 근거함.

## [평생교육법]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1.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2.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의 종업원
3.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부품·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12.30.>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

⑤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 사내대학의 교육이수결과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며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사실상 대기업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위과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한승희, 2006).
- 사내대학과 더불어 사내기술대학과 기술대학도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되는데 생산·제조부분의 기업이 기술인력의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대학은 산업체 취업자가 직무를 떠나지 않고 기존의 산업대·방송통신대 등을 통하여 학습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3)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

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임(평생교육 시행령, 2014)

-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간,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시행령에 따르면 수수료 또는 통신료가 아닌 학습비를 받는 경우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학습비의 범위나 신고절차는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3조에 근거함.

[평생교육법]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원격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평생교육시설로서 그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학력인정과 학위가 수여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정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관계로 일반대학과 차별대우가 있어 각종 지원정책을 펼쳐 가고 있음(한승희, 2006).

## 2)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조건

### (1)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 평생교육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함.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등록신청서를 교육감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친 후 등록증을 해당지역 교육감으로부터 교부받음으로 정식 인가됨. 등록신청서는 운영규칙, 교육과정 편성표,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시설·설비 현황표, 시설배치도,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임.
- 학교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학력인정을 받는 교육시설이기 때에 정규학교와 마찬가지로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인가가 되나, 인가절차에 비해 비교적 완화되어 있는 상황이며 학교의 운영 측면에서도 정규학교와 달리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음.
-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관할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업연한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고 3년의 교육과정을 2년 만에 마칠 수 있음.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

생교육시설의 1년 3학기제 운영방안은 시간이 경과되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로 하여금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의도된 방안임(박태준, 김한별, 2002).

-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수업일수, 수업시수, 교육과정, 학생정원·학급수 및 학급편성, 교원자격·정원, 시설 및 설비 등 관련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각종학교의 설립·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2)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 평생교육 시행령 제36조에 근거함.
- 사내대학 설치계획서 서류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운영규정(학칙), 향후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향후4년간(2년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교육·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 교원 확보계획, 개교예정일임.

## (3)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평생교육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함.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1.1.27., 2013.3.23., 2014.7.28.>

1. 위치도
2. 시설배치도
3. 시설·설비 현황표
4.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5.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6.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 6의2.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7.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8.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설비 6. 개설예정일 7. 평생교육사

## 2)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사례

### (1) 양원초등학교

#### ■ 설립배경

- 2005년에 인가받은 성인 대상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임.
- 초등과정에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립자가 인식하고 꾸준히 설립을 위해 대외적으로 노력한 결과 얻게 된 결실임.
- 우리나라에서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기에 성인 대상 초등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수용되지 않았으나 의무교육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다시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논리의 타당성이 받아들여져서 설립됨.

■ 학교운영방침

- 학령기의 아동들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설립자는 학생들에게 기초능력은 어느 정도 함양되어 있겠지만 이를 다시 확인하여 다지고 증진시켜 나가고, 삶의 애환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교양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당당히 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교훈인 성실, 근면, 화목에 그대로 반영 되어 있음.

■ 학생·교직원 현황

- 학생은 현재 총 1,273명임. 제1학년과 제2학년의 경우에는 오후반이, 제4학년과 제5학년의 경우에는 오전반이 상대적으로 더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오전반과 오후반이 632명과 630명으로 거의 같음.

<표 2-16> 양원초등학교 학생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제1학년		제2학년		제4학년		제5학년		계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수	학생수
오전반	4	152	4	160	4	160	4	160	16	632
오후반	5	190	5	200	3	120	3	120	16	630
유공자		1		7				3		11
계	9	343	9	367	7	280	7	283	32	1,273

출처 : 양원초등학교, 2011, 211.

- 학생들의 연령대는 10대에서 80대까지 걸쳐 있으며, 60대가 가장 많고, 70대와 50대가 그 뒤를 잇고 있음. 이것은 배움의 기회가 열릴 때 연령은 결정적인 한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줌. 남자에 비해서는 여자가 절대적으로 많음.

&lt;표 2-17&gt; 양원초등학교 학생의 연령대 분포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학년	1					1	1	5	1	52	3	194	2	80		3	8	335
2학년	1			1				4	1	62	5	185	2	89		6	9	347
4학년						2		4	1	54	3	144	1	76		3	5	281
5학년						3	1	3	2	47	3	147		91			6	286
소계	2			1		6	2	16	5	215	14	670	5	336		12	28	1,249
총계	2		2		6		18		220		684		341		12		1,277	

출처 : 양원초등학교(2011). 201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6.

- 교직원은 각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교 행정을 전담하는 교장과 교감, 그리고 이들이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실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교장은 학교 설립자가 맡고 있음.

&lt;표 2-18&gt; 양원초등학교 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장	교감	교사	행정실			계
				실장	사무원	학교관리원	
남	1			1		1	11
여		1	24		4		29
계	1	1	32	1	4	1	40

출처 : 양원초등학교(2011). 201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211.

### ■ 차별적 요소(역점 프로그램)

- 양원초등학교에서는 비록 성인이 되어 뒤늦게 초등과정을 이수한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학업이 교과목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목 공부와 관

런된 동화책 읽기, 편지쓰기, 펜글씨쓰기, 나의 주장 발표, 동화 구연, 팝송 경연, 명예 교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한글을 못 읽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명예교사제를 도입하여 담임교사가 명예교사와 연계하여 방과 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음.

## (2) 대우조선해양 공과대학

### ■ 설립배경

- 2012년 1기 중공업사관학교(비인과과정)에서 2013년 2기 '대우조선해양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로 전환함.
- 중공업 전문가 육성에 대한 초기 목표를 유지하며 사내대학으로 도입이 가능하며, 학력으로 인한 성장의 제약 및 사회적 편견 해소, 선 취업 후 학업의 사회 기조 선도(교육부 적극 권장)로 인하여 설립함.

### ■ 기대효과

- 회사의 물적·인적·시간적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강화됨.
- 중공업사관생도에 대한 장기적 성장 경로 제공할 수 있음.
- 양질의 고졸 인력 채용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 있음.

### ■ 교직원 현황

- 교직원은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9> 대우조선해양 중공업사관학교 교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부장	차장	과장	대리	4급 사원	사원	계
인원	1	1	2	1	1	2	8

### ■ 차별적 요소

- 고졸 채용 신입사원들의 미래 인재 육성이 목표임.
-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로 사무기술직으로 입사와 동시에 입학자격 부여됨.
- 학사운영에 있어 1년차는 풀타임 전일제 교육을 실시함.
- 명사특강, 테마 교양교육, 체육활동 등의 비 학점과정을 운영함.
- 전원 기숙사 생활하며 숙박비 지원함.

<표 2-20> 대우조선해양 중공업사관학교의 차별적 요소

	대우조선해양 공과대학 (중공업사관학교)	타 사내대학
목표	고졸 채용 신입사원들의 미래 DSME 인재 육성	재직 직원들의 학위 취득 및 역량 강화
입학자격	당해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사무기술직으로 입사와 동시에 입학	생산직 재직 사원들 중 선발
학사운영	1년차: 풀타임 전일제 교육 2년차 - 3년차 -입대자: 군휴직 -면제자: 업무집중(OJT), 비학점 역량과정 4년차: 주간 업무, 야간 학습	전 과정 업무 병행 학습
비학점과정 운영여부	명사특강, 테마 교양교육, 1인 1기, 체육활동 등(매주 15H 이상 구성 실행)	비학점 과정 운영 없음
병역	미필자(일부 면제자)	병력필자(일부 미필 또는 면제)
생활	전원 기숙사 생활(숙박비 지원)	자율

### (3) 한양사이버대학교

#### ■ 설립배경

- 지식기반의 정보 사회로 일컫는 밀레니엄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상황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져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됨.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가 주도하는 제도적 기반이 1999년 8월 31일 평생교육법, 2000년 3월 13일 평생교육법시행령과 평생교육법시행규칙으로 마련됨에 따라 2009년 한양사이버대학교를 설립함.
-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소외된 계층과 재교육이 필요한 성인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모든 이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스스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인류사회의 번영에 기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설립의 목적이 있음.

■ 학생현황

- 신입생은 2,337명으로 72.1%의 충원율을 보임.

<표 2-21> 신입생 현황

정원내 모집인원	정원내 입학자수	정원내 지원자수	정원내 신입생충원율*	경쟁률
3,240	2,337	3,001	72.1%	0.9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 입학자수/정원내 모집인원)\*100(%)

- 재학생수는 12,255명으로 105.2%의 충원율을 보임.

<표 2-22> 학생 충원율 현황

학생정원	학생모집 정지인원	재학생수	학생 충원율
11,645	0	12,255	105.2%

- 중도탈락 학생수는 2,661명으로 17.2%에 해당함.

<표 2-23> 중도탈락현황

재적학생	중도탈락학생	중도탈락학생 비율(%)
15,490	2,661	17.2%

### ■ 교원 현황

- 한양사이버대학교 6개 계열 21개 학과에 소속된 전임교원과 겸임교원은 85명으로 구성됨.

<표 2-24>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원 현황

(단위 : 개, 명)

계열	학과(부)	전임교원	겸임교원
공학계열	컴퓨터공학과	6	3
	정보통신공학과		
	자동채T융합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인문/교육계열	교육공학과	26	2
	아동학과		
	미술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일본어학과		
	청소년학과		
사회계열	부동산학과	13	4
	사회복지학부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계열	경영학부	20	2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	7	1
교양계열	교양학부	1	-
계		73	12

출처 : [http://www.hycu.ac.kr/univinfo/About\\_Info.asp](http://www.hycu.ac.kr/univinfo/About_Info.asp)

### ■ 차별적 요소

- 교육공학에 따른 7단계에 걸쳐 체계적이고 엄격한 개발관리 프로세스를 통해 강의를 개발함. 우수한 강의 콘텐츠가 가장 큰 장점임.
- 첨단 디지털 방송 제작 시스템과 콘텐츠 개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등 콘텐츠 제작 시설면에서 최고를 자랑함.

- 교수-학생 간 일대일 지도를 할 수 있는 학생 상담 시스템을 마련하여 강의 시 발생하는 의문점이나 문제점을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해결 가능함.
- 과제와 온라인 시험 등을 엄격히 평가하고 학점을 매겨 학생들의 학업성취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
- 모바일로 교육영역을 확장해 학생들의 어디서든 강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제공함(전체 강의 중 60% 정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강 가능).

## 제3장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실태 및 여건

1. 비정규학교 운영 실태
2. 비정규학교 운영 여건



## 제3장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실태 및 여건

### 1. 비정규학교 운영 실태

#### 1) 기본 현황

- 비정규학교 기본 현황에는 교사수, 행정직원수, 학생수, 시설면적이 포함되었음. 교가수는 124명이었는데 이중 67.7%에 해당하는 84명은 동려평생학교와 서귀포오석학교에 소속된 교사였음.

<표 3-1>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기본사항

학교명 (학교장)	교사수			행정 직원수(명)			학생수(명)			시설면적(㎡)		
	계	정규	자원	계	상근	비상근	계	문해반	검정고시반	계	교실	기타
계	124	0	124	8	8	0	522	340	182	2325	1149	1176
동려평생학교 (한경찬)	45	0	45	1	1	0	237	179	58	941	367	574
동려청소년학교 (한경찬)	10	0	10	2	2	0	16	0	16	285	285	0
제주등하학교 (강재흥)	13	0	13	1	1	0	25	0	25	142	142	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오옥만)	17	0	17	3	3	0	55	30	25	218	130	88
서귀포오석학교 (양봉관)	39	0	39	1	1	0	189	131	58	739	225	514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교사 중에는 정규교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자원봉사의 교사로 파악되었음. 그러나 문해교육 교사 중에는 유급 교·강사가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 있어서 (홍숙희, 2014), 교사 중 정규교사의 개념이 모호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직원수의 경우 전체 8명으로 모두 상근직원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이 역시 2014년 연구된 홍숙희의 연구보고서에서의 통계와는 차이가 있어서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학생수는 5개 기관에서 총 522명(연인원 기준)으로 대부분의 학생은 동려평생 학교와 서귀포오석학교에서 배출되었음. 두 학교의 졸업생은 426명(81.6%)이었음.
- 시설 면적의 경우 역시 동려평생학교와 서귀포오석학교의 면적이 가장 컸으며, 가장 적은 면적은 제주등하학교였음. 제주등하학교의 시설총면적은 142m<sup>2</sup>로 동려평생학교의 약 1/6 수준이었음.

## 2) 교원 현황

- 비정규학교 교원현황에는 교사의 유형별 현황, 급여 수준이 포함되었음. 자원 교사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대학(원)생이 다수였고, 그 다음이 현직교사, 퇴직 교사의 순이었음.
- 자원교사의 유형 중 기타의 비중이 64.2%로 가장 높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인지는 제시되지 않았음. 결국 교사나 대학(원)생이 아닌 무직, 기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음.
- 학교 임직원의 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5개 비정규학교의 상근직원 평균 급여는 133만원이었음. 5개 비정규학교 중 제주등하학교가 16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려평생학교와 동려청소년학교가 109만원으로 낮았음.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근직원의 임금 수준으로서는 열악한 것으로 판단됨.

&lt;표 3-2&gt; 자원교사 유형별 내역

학교명	계	현직교사	퇴직교사	대학(원)생	기타
계	123	16	6	22	79
동려평생학교	45	1	5	7	32
동려청소년학교	10	4	0	2	4
제주등하학교	13	4	0	3	6
제주장애인야간학교	16	1	0	7	8
서귀포오석학교	39	6	1	3	29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lt;표 3-3&gt; 학교 임직원 급여 지급내용

학교명	학교장	교사	상근직원	기타
계			평균 133만원	
동려평생학교			109만원	
동려청소년학교			109만원	
제주등하학교			166만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40천원	125만원	
서귀포오석학교			156만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3) 교육과정 및 재학생 현황

- 교육과정 운영 시간을 보면 동려청소년학교와 제주등하학교는 주로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거나 대입 준비 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려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는 성인문해교육과 검정고시반을 모두 운영하였음.
- 검정고시반이라고 해서 교과수업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었음. 예를 들어 동려청소년학교의 경우에는 주간에 매일 2시간씩 바리스타과정, 조리과정, DIY과정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음.

<표 3-4> 교육과정 운영시간

학교명	성인문해교육	검정고시반
동려평생학교	<주간반 초·중·고급수준> → 월, 수, 금 14:00 ~ 16:00 <야간반 초·중·고급·중학수준> → 월 ~ 금 18:30 ~ 21:30	<야간반 중·고·대입> → 월 ~ 금 18:30 ~ 21:30
동려청소년학교		<대입> → 월 ~ 금 18:00 ~ 21:10
제주등하학교		<대입> → 월 ~ 금 19:00 ~ 22:15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초·중·고급> → 14:00 ~ 16:00	<중입> → 14:00 ~ 17:00 <고·대입> → 19:00 ~ 21:00
서귀포오석학교	<초급> → 10:00 ~ 12:00, 19:00 ~ 20:30 <초·중·고급> → 19:00 ~ 21:00	<중입> → 19:00 ~ 21:00 <고·대입> → 19:00 ~ 22:0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성인문해교육의 재적학생수를 보면 전체가 340명으로 동려평생학교와 서귀포 오석학교가 총 310명(91.2%)를 차지하였음. 초급이 중급 및 고급보다는 약간 더 많은 재학생이 있었음.

<표 3-5> 재적 학생수 통계(성인문해교육)

구분	합계			초급(1)			중급(2)			고급(3)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340	22	318	113	9	104	94	6	88	95	4	91	38	3	35
동려평생학교	179	6	173	32	2	3	56	0	56	53	1	52	38	3	35
동려청소년학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등하학교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주장애인야간학교	30	13	17	10	6	4	10	4	6	10	3	7	0	0	0
서귀포오석학교	131	3	128	71	1	70	28	2	26	32	0	32	0	0	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성인문해교육의 재학생을 연령대별로 구분하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230명으로 전체의 68.7%였음. 중년층인 40-50대도 84명으로 25.1%였음.

&lt;표 3-6&gt; 재적 학생수 통계(성인문해교육-연령별)

학교명	합계	19세 이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계	335	3	18	84	230
동려평생학교	179	3	4	58	114
동려청소년학교	0	0	0	0	0
제주등하학교	0	0	0	0	0
제주장애인가간학교	30	0	11	14	5
서귀포오석학교	126	0	3	12	111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검정고시반의 경우에는 총 재학생이 182명이었고 동려평생학교와 서귀포오석학교의 비중이 높았으나 다른 학교의 재학생도 66명으로 문해교육에 비해 비중이 높게 나타남. 대부분은 고졸 검정고시 준비반이었음.

&lt;표 3-7&gt; 재적 학생수 통계(검정고시반)

구분	합계			중입			고입			고졸			기타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82	39	143	21	5	16	56	7	49	105	27	78	0	0	0
동려평생학교	58	4	54	3	1	2	23	1	22	32	2	30	0	0	0
동려청소년학교	16	4	12	0	0	0	0	0	0	16	4	12	0	0	0
제주등하학교	25	14	11	0	0	0	0	0	0	25	14	11	0	0	0
제주장애인가간학교	25	8	17	10	4	6	10	3	7	5	1	4	0	0	0
서귀포오석학교	58	9	49	8	0	8	23	3	20	27	6	21	0	0	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검정고시반 재학생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40대 중년층과 60대 이상의 노년층이 114명으로 62.6%였음. 문해교육과는 달리 19세 이하도 37명(20.3%)으로 비교적 다수의 학생이 분포하였음. 이러니 경향은 고졸검정고시반에서 더욱 두드러져서, 19세 이하의 학생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3-8> 재적 학생수 통계(검정고시반-연령별)

학교명	합계	19세 이하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계	계	182	37	31	51	63
	중입	21	3	4	9	5
	고입	56	3	3	17	33
	고졸	105	31	24	25	25
동려평생학교	계	58	5	8	21	24
	중입	3	3	0	0	0
	고입	23	2	0	9	12
	고졸	32	0	8	12	12
동려청소년학교	계	16	9	7	0	0
	중입	0	0	0	0	0
	고입	0	0	0	0	0
	고졸	16	9	7	0	0
제주등하학교	계	25	13	6	6	0
	중입	0	0	0	0	0
	고입	0	0	0	0	0
	고졸	25	13	6	6	0
제주장애인가간학교	계	25	0	5	14	6
	중입	10	0	2	5	3
	고입	10	0	2	7	1
	고졸	5	0	1	2	2
서귀포오석학교	계	58	10	5	10	33
	중입	8	0	2	4	2
	고입	23	1	1	1	20
	고졸	27	9	2	5	11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4) 검정고시 현황

- 2013년도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률을 보면, 응시자는 총 117명이었고 합격자는 57명으로 합격률이 약 49%였음. 고입과 고졸은 평균과 대체로 비슷하였으나, 중등교육입학 검정고시의 경우 57%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남.
- 가장 높은 합격률은 제주등하학교의 고졸자격 검정고시로 70%의 합격률을 보였음. 반면에 가장 낮은 합격률은 0%로 동려평생학교의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였음.

<표 3-9> 검정고시 응시 및 합격률('13. 2차)

구분	합계	중입	고입	고졸	기타
계	응시자수	117	7	34	76
	합격자수	57	4	16	37
	비율	49%	57%	47%	49%
동려평생학교	응시자수	33	2	15	16
	합격자수	15	0	9	6
	비율	45.4%	0%	60%	37.5%
동려청소년학교	응시자수	15	0	0	15
	합격자수	8	0	0	8
	비율	53%	0	0	53%
제주등하학교	응시자수	13	0	0	13
	합격자수	9	0	0	9
	비율	70%	0	0	70%
제주장애인가간학교	응시자수	21	3	11	7
	합격자수	9	2	3	4
	비율	43%	67%	27%	57%
서귀포오석학교	응시자수	35	2	8	25
	합격자수	16	2	4	10
	비율	48%	100%	50%	40%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5) 학교 시설 및 재정 현황

- 학교 시설 및 재정 현황에서 학교 시설은 연간 임대료가 무상인 경우는 3곳 (동려평생학교, 동려청소년학교, 서귀포오석학교)이었음. 무상의 경우 도유지 무상임대 등의 형태였고, 유상의 경우에는 사적 임대 형태였음.

<표 3-10> 학교시설 사용

구분	연간 임대료	비고
계	-	-
동려평생학교	무상	도유지 무상임대
동려청소년학교	무상	도유지 무상임대
제주등하학교	500만원	사유 임대('13. 8 ~ '14. 8)
제주장애인가간학교	880만원	사유 임대('14. 3 ~ '16. 2)
서귀포오석학교	무상	등기이전 추진중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학교 재정의 경우 우선 학교 운영비에서는 총액이 4억 6천 8백여 만 원이었음. 학교운영비가 많은 기관은 동려평생학교, 제주장애인가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의 순이었음. 항목별로는 기타 잡비와 인건비가 3억 7천여 만 원으로 79.2%였음.

<표 3-11> 연간 학교 운영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인건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기타잡비
계	<b>468,020</b>	<b>138,334</b>	<b>95,871</b>	<b>23,494</b>	<b>232,461</b>
동려평생학교	123,000	17,000	29,000	9,000	68,000
동려청소년학교	77,000	17,000	11,000	600	48,400
제주등하학교	59,930	20,000	0	1,200	38,730
제주장애인가간학교	115,420	65,734	30,871	2,400	16,415
서귀포오석학교	92,670	18,600	25,000	10,294	60,916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자료.

## 2. 비정규학교 운영 여건

### 1) 동려평생학교

- 학교 유형: 학력인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개교 및 연혁
  - 1975년 4월 3일 동료야간학교 개교. 2001년 7월 27일 사단법인 동료로 개칭
  - 2004년 7월 21일 동료평생학교로 개칭.
- 교육 목적
  -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진취적인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남을 위하는 봉사 정신을 키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인을 양성한다.
- 교육과정 운영
  - 학기제 : 봄 학기제(2월 입학), 1년 2학기제(2월-8월, 9월-12월)
  - 교과과정: 주간반(초등과정 3개반, 월수금 오후 2시-4시)  
야간반(초등과정 3개반, 중등과정 2개반, 고등과정 1개반, 월-금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
  - 교육내용: 초등부(한글 기초 및 기초 계산 능력)  
중등부(중등과정 기초내용 및 중졸검정고시대비)  
고등부(고등학교졸업 검정고시대비)
  - 과외활동: 제주도 탐방, 자원봉사 행사, 수련회, 수요일 문화강좌, 체육대회, 호롱제(가족행사) 등
- 운영 인력 및 시설
  - 시설은 무상임대 형태로 전체 실수가 7개이며 이중 교실은 5개임.
  - 총 근무자는 69명으로 대표자 1명, 상근실무자 3명, 무급 교·강사 35명, 자

원봉사자 30명으로 구성됨(홍숙희, 2014, 54).

○ 특성

- 제주지역의 대규모 평생교육기관 중에 하나로 사단법인 동료의 산하 기관 중에 하나임.
- 문해교육과 검정고시 대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성인 대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무료로 운영됨.
- 제주시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음. 수업시간을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 최근까지 약 1,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음.

## 2) 동려청소년학교

○ 학교 유형: 학력인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개교 및 연혁

- 1975년 4월 3일 동료야간학교 개교. 2001년 7월 27일 사단법인 동료로 개칭
- 2007년 5월 1일 동료청소년학교 개교.

○ 교육 목적

- 정규교육과정에서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한 청소년학생들에게 건전한 인격과 지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키워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으로 육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교육과정 운영

- 학기제 : 고등과정 1개반(학년별 교육과정은 1년으로 함)
- 교과과정

야간 수업: 검정고시 교과수업

주간 수업: DIY, 요리, 음악,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월-금요일까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운영함.

- 과외활동은 동려평생학교와 연계하여 제주도 탐방, 자원봉사 행사, 수련회, 수요일 문화강좌, 체육대회, 호롱제(가족행사) 등 실시함.

○ 특성

- 사단법인 동려의 부속기관으로 학교 중도탈락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기관임.
- 주간과 야간에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함. 주간에는 취미와 직업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에는 고등학교 교과수업을 진행함.
- 최근까지 800여명의 졸업생 배출함.

### 3) 제주등하학교

○ 학교 유형: 학력미인정 형태의 검정고시 대비 야학

○ 개교

- 1992년 10월 18일 14명의 학생으로 개교

○ 교훈 및 성취목표

- 교훈: 너의 의지로 등불을 밝혀라.
- 성취목표: 중등교육 수준의 교양과 지식을 습득한다.

평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습동기를 부여한다.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한다.

○ 교육과정 운영

- 9월 가을학기를 1학기로 시작하여 고졸 검정고시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운영함. 9월 1학기는 9, 10, 11, 12월까지 4개월간 운영함. 5월 2학기는 5, 6, 7, 8월까지 4개월간 운영함.
- 저녁 7시부터 10시 15분까지 4교시로 운영함.
- 과목은 검정고시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영와와 수학만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함. 교재는 EBS 방송교재를 활용함.

○ 운영 인력

- 교사는 2014년 13명, 2015년 17명 정도로 대학생 자원봉사자 및 현직교사 등으로 구성됨. 2015년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구분하면서 교사가 증원됨.
- 2014년 현재 재학생은 28명 정도이며 청소년이 70% 정도 차지하고 성인은 30% 정도됨.
- 비정규학교 지원을 받기 위한 상근인력이 1명 근무하고 있음.

○ 특성

- 학생 및 부모들의 요구로 수능 준비보다는 검정고시를 통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러다 보니 진로지도에 대한 시간 할애를 많이 하여 검정고시 준비와 진로지도가 주요 교육활동이 됨.
- 문해교육기관으로 변화하고자 하나, 상근직 인력을 더 확대해야하는 등 예산 및 인력에서의 한계점에 봉착해 있음. 현재 1명이 상근직으로 근무하지만 낮은 급여수준과 오후 11시까지 근무해야하는 여건 등으로 인하여 대체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학교 운영 조건이 열악하여 휴게실 운영, 식사 제공, 토요일 활동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체적인 출석율은 70% 정도 수준임.

#### 4) 제주장애인가간학교

○ 학교 유형: 학력미인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개교

- 2004년 2월 19일 개교

○ 기관 운영 목표

- 학령기를 놓친 무학 및 저학력 학력 취득을 통한 성인중증장애인 자기 신뢰감 및 자신감 회복과 성인중증장애인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지

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함(홍숙희, 2014, 50).

○ 교육과정 운영

- 장애인 대상 문해교육과정,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대비반, 컴퓨터 학습반, 미술활동반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함.
-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생 관리 카드 및 출석부 운영, 분기별 학회외의 및 교사회의 운영, 중증장애인 이동보조, 주 1회 특별활동 지원(연극, 영상, 풍물, 노래, 서진, 난타, 미술 등) 등을 운영함.

○ 운영 인력 및 시설

- 시설은 유상입대 형태로 전체 실수가 3개이며 이중 교실은 2개임.
- 총 근무자는 19명으로 대표자 1명, 상근실무자 5명, 유급 교·강사 13명으로 구성됨(홍숙희, 2014, 54).
- 문해교육 재학생: 문해반(문해 1단계의 재학생은 장애인 10명으로 구성됨. 중학교입학검정고시반은 문해2·3단계로 장애인 7명과 비장애인 3명으로 구성됨. 고등학교입학 검정고시반은 중학 수준의 문해교육으로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2명으로 구성됨. 외국어반은 문해 3단계로 장애인 3명과 비장애인 2명으로 구성됨(홍숙희, 2014, 57).

○ 특성

- 장애인대상 문해교육이 핵심교육과정이며 동시에 검정고시 대비반을 운영하여 문해교육기관과 학력보완교육기관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
- 장애인에 특화된 평생교육시설로서 안정적인 인력 운영(대표 1명, 상근직 5명)이 우수하게 판단됨.
- 문해교육 및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컴퓨터, 미술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종합평생교육기관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확대하고 있음.

## 5) 서귀포오석학교

- 학교 유형: 학력인정 및 미인정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개교 및 연혁
  - 1967년 5월 16일 서귀포재건학교로 개교하여 1986년 서귀포오석학교로 교명 변경.
  - 2013년 8월 초등 19회, 중등 43회, 고등 27회 졸업식 운영.
- 교훈 및 교사 신조
  - 교육 :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기르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힘을 갖자.  
     착하고 부지런한 인격을 닦자.
  - 교사 신조 : 나의 봉사하는 일은 나 자신의 확충이며  
     향토를 개발하려는 사명은 자신의 자발적 정신이며  
     능력껏 일하고 소신껏 사랑하며 열을 바친다.
  - 교목 : 담팔수 나무, 교화: 국화
- 교육과정 운영
  - 학기제 : 가을 학기제(9월 입학), 1년 3학기제(4개월/1학기)
  - 교과과정

<표 3-12> 서귀포오석학교 교육과정

반	교육내용
한글 교실	한글 기초
한글반	문해 1단계(소망의 나무) 한글 기초 및 셈 이해
새날반	문해 2단계(배움의 나무) 한글 및 산수 심화, 기타 정규교과 기초 학습
여울반	문해 3단계(지혜의 나무) 중입대비반 : 초등 전과정(초등검정고시 대비반)
늘푸른반	중학교 과정, 고입검정고시대비 학력보완교육
해냄반	고등학교 과정, 고졸검정고시대비 학력보완교육

출처: 서귀포오석학교 홈페이지.

- 교과시간

- 1일 4교시 / 40분 수업 (늘푸른반, 해냄반)

- 1일 2교시 / 50분 수업 (한글교실, 한글반, 새날반, 여울반)

- 과외활동: 상록예술제, 문예행사, 체육대회, 소풍, 제주알기, 작은음악회,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특별교과운영

- 수업연한: 초등과정 3년, 중등과정 1년, 고등과정 1년

- 운영 인력 및 시설

- 시설은 무상임대 형태로 전체 실수가 10개이며 이중 교실은 6개임.

- 총 근무자는 105명으로 대표자 1명, 상근실무자 1명, 유급 교·강사 8명, 무급 교·강사 31명, 자원봉사자 64명으로 구성됨(홍숙희, 2014, 54).

- 학교의 부서는 교무부, 연구부, 학생부, 홍보부, 담임부의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음.

- 특성

- 문해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오랜 전통의 학력형태 평생교육시설임. 문해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반도 운영하고 있음.

- 다수의 교·강사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 제주지역 문해교육 기관 중 우수한 시설, 인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자 역시 대규모로 대표적인 기관임.

## 제4장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1. 운영 활성화 방향
2. 운영 활성화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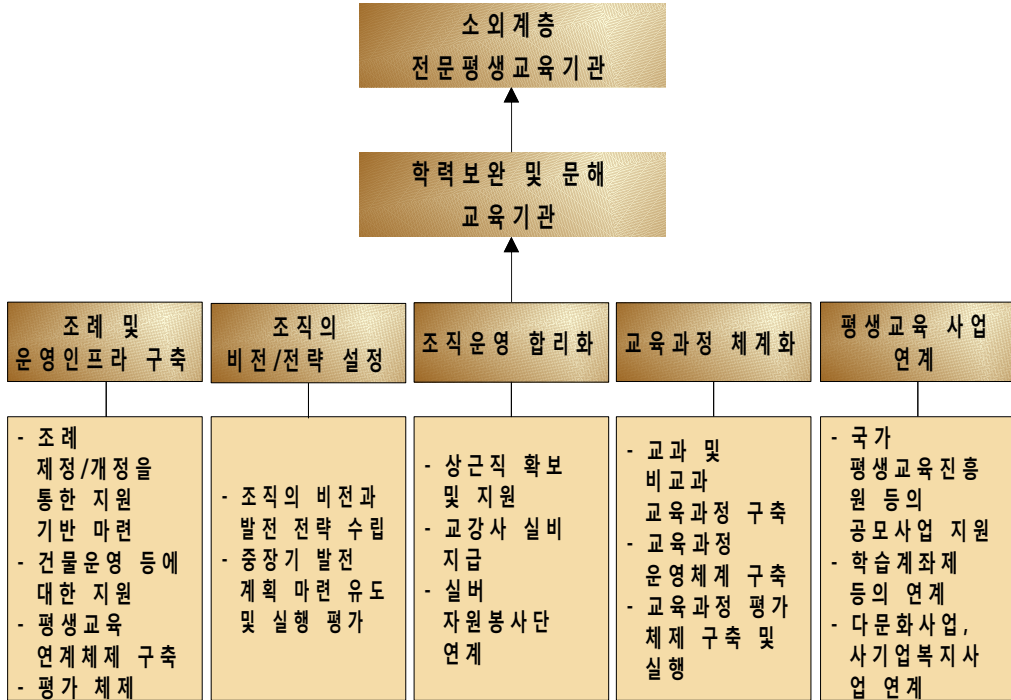


## 제4장 제주지역 비정규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

### 1. 운영 활성화 방향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학력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소외계층 전문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해나가는 방향을 설정함.
- 학력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의 발전 방향은 제주지역 5개 비정규학교가 어느 정도 도달해 있는 모습이기도 함. 즉, 검정고시나 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력보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또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비문해자에 대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함. 실제로 동려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서귀포오석학교는 성인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특히 청소년, 노년의 문해교육 및 학력보완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제주지역 비정규학교의 학력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제고가 요청되고 있음. 이에 학력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서 학교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변화노력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및 기관의 위상 제고의 노력이 필요함.
- 학력보완과 문해 교육은 교육 및 경제적 소외계층이 교육대상이 되기 쉬움. 따라서 제주지역 비정규학교는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학력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서 역량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획 제공, 소외계층 교육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경험 축적 등의 추가적인 발전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임



<그림 4-1> 비정규학교 운영활성화 방향 및 전략

## 2. 운영 활성화 전략

### 1) 조례 및 운영인프라 구축

- 학력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5가지 전략 중 첫째는 조례 및 운영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조례의 경우 기존에 비정규학교 지원을 위한 조례가 2013년부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비정규학교라는 표현상의 문제, 비정규학교의 발전 방향의 설정에 따른 지원 방식의 변화 등을 반영하

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는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가능함.

- 타시·도나 시·군·구의 경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21개임. 이중 광역시·도는 경상북도와 울산시임. 다른 광역시·도나 지자체는 평생학습진흥에 관련한 조례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하거나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학력보완교육에 대하여 독립적인 조례를 지정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

### (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방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이 조례의 성인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고, 학력보완교육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중 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에 대한 조항은 10조 2항에 포함되어 있음.

**제10조의2(성인문자해득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저학력 성인의 문자해득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 문해교육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성인 문해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5.]

- 10조 2항에는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단체 지원, 연수 과정 운영, 문해행사 개최, 공동 사업 추진, 공공시설 이용 지원,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사실상 제주지역 5개 비정규학교 중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동려평생학교, 제주장애인야간학교, 서귀포오속학교는 이 조례 조항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 관련된 질관리를 할 수 있음.
- 다만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려청소년학교와 제주등하학교의 경우 검공시반을 운영하는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조례 조항의 신설이 필요함. 즉, 학력보완교육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동려청소년학교와 제주등하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다만 이런 경우 다른 학력보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지원 요청에 대한 대응도 고민되는 사항임. 신설하는 조항의 예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제10조의3(학력보완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하고 저학력 청소년 및 성인의 학력보완 및 학위취득을 위한 학력보완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저학력 청소년 및 성인 조사 실시
2. 학력보완교육 종합계획 수립
3. 학력보완 교육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
4. 학력보완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5. 학력보완 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개최
6. 그 밖에 학력보완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학력보완 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학력보완 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보완 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5.15.]

## (2) “제주지역 학력보완교육 및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방안

- 가칭 “제주지역 학력보완교육 및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가능함. 이 경우에는 학력보완교육과 문해교육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조치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업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예를 들어 비정규학교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검정고시 교과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화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음.

## (3) 운영인프라 구축 지원

- 제주지역 비정규학교의 학력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서 변화 및 질 제고를

위하여 운영인프라 체계의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함. 특히 5개 비정규학교 중 2개 기관은 개인 사비를 투입하여 건물 대여료를 내고 있는 상황임. 연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로 이를 경감하기 위한 지원이 요청됨. 다른 기관의 경우 무상임대 형태이며, 제주도유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가 요청되는 사항임.

- 평생교육 연계체계 구축도 필요함.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 추진 체계나 운영 체계가 존재함. 즉,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평생교육 네트워크, 평생교육정보시스템 등임. 여기에 5개 비정규학교의 참여, 연계,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함. 이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체계에 비정규학교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임.
- 더불어 비정규학교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평가체제라고 할 수 있음. 진흥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준에서 비정규학교에 대한 연간사업 평가회를 실시하는 것임. 이를 위하여 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지표에 따른 비정규학교의 자체 평가 보고서 작성 및 보고서 발표회를 실시함. 더불어 발표회에서 전문가 및 평가단에서의 자문과 피드백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2) 조직의 비전/전략 설정

- 학력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둘째 전략은 조직의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하는 것임. 여기서 말하는 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과 5개 비정규학교를 모두 의미하는 것임.
- 즉,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평생교육 발전계획에서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청됨. 현재는 단지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는 표현만 있어서 구체적인 방향을 그리기는 쉽지 않음. 따라서 비정규학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발전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의 목표와 방향 설정 역시 필요함.

- 더불어 5개 비정규학교에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학력 보완 및 문해 교육기관으로서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이를 비전, 전략 등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청됨. 현재 5개 비정규학교들은 비전이나 전략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추상적인 교육 목적이나 교육, 운영 방향 등을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며,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워크숍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으로 계획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 중장기 발전계획을 비정규학교에서 설립할 경우 주기적으로 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평가 작업도 필요함. 이를 위하여 비정규학교의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 및 이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에서의 평가 절차가 필요함.

### 3) 조직운영 합리화

- 조직운영의 합리화는 비정규학교의 운영 여건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전략임. 비정규학교의 규모에 상관없이 상근직원 수가 매우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대우 역시 열악한 상황임. 이전의 조례에 의하여 상근직을 두어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상근직에게 제공되는 급여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인 경우도 있음. 따라서 상근직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들에 대한 급여나 처우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요청됨.
- 특히 검정고시반을 주로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검정고시 교육과정이 오후나 저녁에 운영되어 밤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해야하고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다시 오전에 출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이중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음. 또한 상근직이라는 개념 역시 이런 다중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점에서 급여 및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교·강사의 경우 일부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무료 또는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운영됨. 자원봉사자의 활용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의 시간급을 제공하는 것이 고려할 수 있음. 이는 직업으로 비정규학교의 교·강사는 한다는 개념이기 보다는 교·강사 활동을 위한 실비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실버자원봉사단과의 연계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함. 교·강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도 가능하지만, 중·고령층의 학습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안내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의 필요성이 제기됨. 대부분의 자원봉사자가 대학(원)생 등이라는 점에서 동일 세대의 주변인의 생활 속에서의 지속적 도움과 관계 맺음을 통한 학습자 관리 및 참여지속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4) 교육과정 체계화

- 비정규학교지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체계적 질 관리는 기본적인 사항임. 이를 위하여 우선 교과과정과 비교과과정의 균형잡힌 교육과정의 구성이 필요함. 물론 어느 정도 비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관의 행사나 탐방 등의 일회성 행사가 포함되어 있기도 함. 이런 행사를 포함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또는 매일 실시하는 비교과과정의 계획과 실행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바리스타 과정, 도시 농업 과정, 미술 과정 등을 검정고시반의 교육과정이나 문해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또한 비교과과정의 형태로 진로직업 상담 프로그램 운영, 학습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인 방법이 요청됨. 예를 들어 교무회의 실시 및 회의록 작성, 과목별 강의계획서 작성, 교·강사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함.

- 교육과정의 체계적 운영 중에서도 특히 평가 체계의 구축은 더욱 필요해 보임. 학생들을 평가하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 체계로, 만족도 평가 실시 및 분석, 평가 회의 개최, 학생들의 질적 변화 모니터링 등이 패당됨. 이런 평가 체계의 구축을 비정규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진흥원 등에서 기관에 대한 평가 요소로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5) 평생교육 사업 연계

- 평생교육 사업 연계는 비정규학교에서 일부분 해오던 사업임.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받거나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수상 등의 경력까지 있는 비정규학교도 있음. 반면에 평생교육기관이면서도 각종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및 복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함.
- 관련 사업 중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당 기관에게 직접 지원하는 소외 계층대상 지원 사업, 학습계좌제 사업 등의 공모 사업이 존재함. 이런 사업들에 대한 공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기적으로 통보를 해주고 사업을 준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함.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는 다문화인식을 제고하는 등의 사업에 대한 기관단위의 공모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음. 민간의 경우에도 삼성꿈장학재단 등 교육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장학기구들이 존재함. 예를 들어 삼성꿈장학재단의 배움터지원사업 등은 기관단위의 공모사업으로 열악한 지역 상황 및 소외계층 대상 지원이 중요한 준거가 되므로 이런 사업에 응모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임. 종합하면, 비정규학교의 다양한 소외계층 교육프로그램을 대외의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참 고 문 헌

- 강원도교육청, 2009, 「평생교육 업무편람」 .
- 교육부, 2013, 「사내대학 운영 현황 안내」 .
- 교육부, 2013, 「사이버대학 학교현황 및 관련 통계」 .
- 교육부, 201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안내」 .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4, 「2014 평생교육통계자료집」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1,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수립 연구」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2013 평생교육백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4, 평생교육실습 가능기관 유형별 분류. <<https://lledu.nile.or.kr/home/pds/practice/?mode=view&idx=197&page=1>>.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2015,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http://le.nile.or.kr/site/introduce/programSupport/programSupport.action>>
- 국민권익위원회, 2011,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리 체계 개선」 .
- 권두승, 최운실, 2014, 「평생교육경영론」 .
- 김용욱, 2009, 장애인 야학의 전개와 학생·교사 문화: 두 야학 이야기,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진화 외, 2011,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수립 연구」 .
- 김진화, 2009, 「한국 평생교육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
- 노들장애인야학 홈페이지, 2015, <<http://www.nodl.or.kr/>>
-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http://www.dje.go.kr/ecomnew/info/020307.do?menuID=020307>>.
- 박태준, 200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 연구」 .

- 박태준, 김한별, 2002,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학습공동체의 탐색적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8(2) : 127~153.
- 사이버대중합정보 <<http://www.cuinfo.net/home/index.main.action>>.
- 삼성실업학교 카페, 2015, <<http://cafe.daum.net/ss-school>>.
- 서귀포오석학교 홈페이지, 2015, <<http://www.osuk.co.kr/m0106>>.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http://www.sen.go.kr/>>.
- 양원초등학교, 2011, 「201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
-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2015, <[http://www.use.go.kr/jsp/dep/dep08\\_11\\_01.jsp](http://www.use.go.kr/jsp/dep/dep08_11_01.jsp)> .
- 장애인지역공동체 홈페이지, 2015, <[http://www.jangjigong.org/html/sub07\\_1.htm](http://www.jangjigong.org/html/sub07_1.htm)>.
- 충청남도교육청, 2008, 「평생교육 업무편람」.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90899#0000>>.
- 평생교육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EfInfoP.do?lsiSeq=148711#0000>>.
- 평생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83542#0000>>.
- 한국교육개발원, 2009, 「학력인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사내대학, 사내기술대학 및 기술대학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강화방안 연구」.
- 한승희, 2006, 「평생교육론」.
- 화천한옥학교 홈페이지, 2015, <<http://www.hanokschool.co.kr/>>.
- 홍숙희, 2014, 「제주지역 문해교육 기관 운영 현황 조사 연구」.
- HRD-Net 홈페이지, 2015, <[http://www.hrd.go.kr/jsp/HRDP/popup/popTrainOrgan.jsp?inst\\_ino=2218269937000](http://www.hrd.go.kr/jsp/HRDP/popup/popTrainOrgan.jsp?inst_ino=2218269937000)>.